이정일 <칸트 비판철학, 비판적으로 읽기>

칸트 도덕철학의 성립과 타당성 정당화

1. 도덕철학의 성립 배경

1785년에 『도덕형이상학기초』를 쓰고 나서 칸트는 다시 1797년에 『도덕형이상학』을 완성시킨다. 『도덕형이상학기초』와 『실천이성비판』은 도덕법칙의 성립가능성을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응용이나 적용이 아니라 근거Begründung를 다룬다. 이에 반해 『도덕형이상학』은 도덕법칙의 원리적 정당화가 아니라 이것의 응용Anwendung을 다룬다. 『도덕형이상학』은 「덕론」과
「법론」으로 나뉘어진다. 『도덕형이상학』과 『실천이성비판』은 도덕법칙의 타당성을 그리고 『도덕형이상학』은 근거가 아니라 이것의 응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응용은 근거에 있어서 도덕법칙의 타당성 증명을 전제하고 도덕법칙은 타당성의 현실적 응용을 위해 「덕론」과 「법론」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칸트가 이 저서들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 통일로 보려고 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적용은 근거에 의존하고 근거는 타당성 확장을 위해 응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기 때문에 칸트는 이 세 저서를 단절이 아니라 유기적 통일로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도덕법칙의 적용은 도덕법칙 자체의 타당한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도덕법칙의 타당성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타당한 것으로 정당화되어야만 한다. 근거에의 요구는 다른 것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입각해야만 한다는 요구를 따르고 원리의 적용은 동시에 근거에 기초해서 응용된다. 이 관계를 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순수한 개념들로부터 가능한 인식체계가 형이상학적으로 불리워진다면, 자연이 아니라 의지의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철학 역시 도덕형이상학을 전제하고 필요로 한다.....도덕 형이상학은 인간학의 바탕 위에서 근거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학에 적용될 수 있다."(MS321/322)

도덕법칙의 인간학적 적용Anwendung은 도덕법칙의 타당성에 의존한다. 도덕적 근거지움 moralische Begründung이 가능해야 도덕법칙의 응용이 가능하다. 도덕법칙의 타당성 정당화는 실천철학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근거지워야만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자기정당화를 먼저 제시하려고 하였으며 이것의 결과로서 도덕적 응용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기초』에서 마련된 도덕법칙의 선험적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증명이 순수 이성의 사실로서 확증되는 것은 『실천이성비판』에서다. 『실천이성비판』은

이런 바탕 위에서 도덕법칙을 자유의 증명으로 보았다. 자유는 이론이성에서 도출될 수 없고 또한 자유를 능가하는 더 이상의 최고원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칸트는 자유를 보다 상위의 것으로부터 연역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성립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가 그 자체로서 궁극적인 주제고 또한 연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한다면 도덕법칙은 칸트가 보았을 때 자유의 작용이 확인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순수이성이 도덕법칙의 성립근거며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도덕법칙의 필증적 확신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 두 저서는 의지의 자율=자유와 자유가 도덕법칙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만을 밝히기 때문에 도덕법칙을 구체적인 인간학에 적용시키는 도덕법칙의 응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적용이 근거에 따른다면 도덕법칙의 근거문제는 적용에 선행할 수밖에 없다. 도덕법칙의 자기근거 요구와 도덕법칙의 현실적 응용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칸트는 이 둘의 연결가능성을 항상 근거를 통한 적용으로 전개시킨다. 이 점이 망각될 때 칸트의 윤리학을 실천의 결핍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지배하게 된다.

순수형식으로 과도하게 요구된 정언명법의 극단적 형식주의는 보편성의 원칙만 해명할 따름이다. 칸트는 도덕법칙을 근거짓기 위해 이것을 반사실적 기초에 입각해서 해명한다. 여기서 반사실적이란 일차적으로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순수하다는 것과 동의어다. 도덕법칙은 계통발생상 의지의 순수성- 그나마 이것도 순수 형식적인 의미에서- 이 근거를 위해 경험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만 강조한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도덕형이상학기초』와 『실천이성비판』은 도덕법칙과의 경험 연관이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덕법칙은 사실 안에서 스스로를 타당화하는 데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칸트는 도덕법칙이 반사실적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견해만을 갖고서는 도덕법칙의 실천 연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인간학적 응용을 다룰 필요성을 느꼈다. 여전히 플라톤의 물음과 마찬가지로 대립하는 두 질서를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키는 문제가 칸트의 도덕철학에 그대로 남아 있다.

칸트 도덕철학이 실천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칸트는 도덕법칙의 반사실적 토대를 현실세계의 도덕적 인간학에 연결시킬 필요를 인정했다. 단순히 『도덕형이상학 기초』와 『실천이성비판』을 고려하면 칸트의 정언명법은 형식적 보편화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도덕법칙의 현실적 적용이 다루어지는 『도덕형이상학』을 고려하면 이런 의문은 해소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법칙=반사실적 근거라는 것이 도덕법칙의 도덕적 인간학에 대한 적용연관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 도덕철학을 단지 형식주의라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 까지 적용하면 타당성을 상실한다.

『도덕형이상학』의 제2부인 「덕론」에서 개진된 입장은 근본적으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도덕형이상학기초』에서 다루어진 주체를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덕론」은 도덕법칙의 근거에 의존하고 도덕법칙의 타당성 요구는 「법론」을 통해 응용된다. 그러나 『도덕형이상학』의 제1부 「법론」은 분명히 도덕적 정언명법이 아니라 법의 정언명법을 다루기 때문에 『실천이성비판』

과 『도덕형이상학기초』로 환원될 수 없다. 여기서 칸트는 합법성Legalität의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묻는다.

"행위의 의무법칙과의 일치가 합법칙성legalitas이다. 행위준칙들이 인륜법칙과 일치하는 것이 행위의 도덕성moralitas이다. 준칙이란 하지만 행위할 수 있는 주관적 원리다. 이것은 주체 자신이 스스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주체가 의지하는 한에서). 이에 반해서 의무의 법칙이란 이성이 단적으로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주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한에서)"(MS225)

칸트가 말하는 실천철학=도덕철학=인륜구조는 위의 세 저서를 통해서만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 위의 세 저서를 고려할 때 칸트 도덕철학의 체계적인 통일과 전체 모습이 드러난다. 헤겔은 칸트가 도덕성과 합법성을 분리시켜서 다루기 때문에 합법성과 도덕성을 인륜성 안에서 통일시키지 못하고 이것을 대립시킨다고 칸트의 도덕철학을 비판한다. 헤겔의 칸트 비판은 분명히 『도덕형이상학』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칸트는 행위=의지의 자율성이 아니라 행위=모든 법적 주체들에게 타당한 외적 규범의 타당성을 다루기 때문에 행위의 실천연관을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이다. 칸트 실천철학의 현실적 적용과 연관은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칸트의 실천철학을 실천결핍Mangel an Praxis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되지 못한다.

칸트는 타당성의 요구증명의 필요성과 고유성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 상이한 증명요구 때문에 합법성과 도덕성을 구별한다. 그러나 칸트의 실천철학 안에서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어 통일되어 있는 지 그리고 이 둘의 통일이 인륜적 자유로 어떻게 구체화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칸트철학이 실천을 결여한다는 비판은 이 둘의 통일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문맥 안에서 통일되는 가가 불충분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에 향해져 있다. 칸트가 이런 비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논증을 형성하고 있다.

칸트는 윤리적 도덕법칙이 내면에 그리고 법칙성이 외적인 것에 타당하다는 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근거를 위해서 법의 정언명법은 의지의 보편화가 아니라 의지주체들간의 상호주관적인 규범적 구속과 외적강제에 기초한다. 법의 구속력이 그 적용대상에서 오직 하나의 개인에게만 해당한다면 이것은 성립할 수 없다. 법의 적용이 되는 대상은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어야만 한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에서의 구속력은 항상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의 현실적 집행으로 본다. 법의 구속력이 항상 강제성을 동반한다면 이런 강제성의 집행의 근거는 법 자체의 자기정당화와 타당성 증명에 기초한다. 오직 그 때 한에서 법의 규범에 대한 어김은 이에 해당하는 외적 제재를 받는다. 정언명법의 도덕적 보편화는 단지 윤리적 도덕법칙에만 해당한다. 여기서는 강제력의 집행은 없다. 여기서 법칙에 대한 어김은 외적인 제재가 아니라 수행론적인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도덕주체는 보편화 요구의 가능성 앞에 종속한다. 그러나 도덕주체는 도덕주체들간의 상호주관적 구속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의 정언명령은 도덕주체의 보편화 요구가 아니라 법 주체들간의 상호주관적 구속을 요구한다. 내적강제는 적용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자신이다. 외적강제는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타인들이다. 따라서 주체-주체들이 상호주관적 관련을 통해 서로 서로를 묶어주는 보편법칙에 구속하는 것이 법의 정언명법이 다루는 테마다. 법의 정언명법은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된 규범의 외적 구속과 집행을 전제로 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기초』에서 자유를 의지의 자율과 동일시한다. 여기서 자유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되고 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자연의 인과법칙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법칙이 없는 인과성 혹은 자유로부터 비롯되는 인과성이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의지의 자기입법이다. 『도덕형이상학기초』에서 자유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전제되어 있다.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자유를 연역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연역은 어떤 근본원칙으로부터의 도출인데 자유는 자유를 능가하는 다른 원리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원칙이라는 자유의 근본요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나 자유가 연역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유가 증명의 요구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칸트는 자유를 전제하는 것을 넘어서 자유를 증명하고자 한다. 자유는 그 자체가 최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연역을 위해 다른 상급의 원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유는 자기근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단지 실천이성이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자기근거의 요구를 제시할 따름이다.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자유를 연역하는 것 대신에 이것을 도덕법칙과의 연관 아래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 증명은 타당성 요구 정당화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증명(Beweis oder Demonstration)이 아니다.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칸트는 『도덕형이상학기초』에서 자유를 자연법칙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확보했다.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는 도덕법칙의 성립근거로서 부인할 수 없는 필증적 확신으로 드러난다. 자유는 도덕법칙의 성립근거로서 자신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증적인 확실성을 보일 수 있다. 순수이성의 사실은 자유가 실제로 도덕법칙을 통해 작동한다는 작용의 필증적 확신이다. 순수이성의 사실은 자유가 도덕법칙의 작용근거라는 점에서 이런 작용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증적인 확실성을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 단적으로 칸트가 작용의 필연성을 필증적 확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작용의 부재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작용의 부재는 자유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유라는 것은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규정을 통해 도덕법칙을 내적으로 산출하는 자유를 말한다. 자유란 자기규정을 통해서 도덕법칙을 산출하고 동시에 이런 법칙에 종속하고 따르는 의지를 말한다. 법칙을 제정하고 제정한 법칙에 따르는 한에서 도덕적 주체는 자유다. 법칙을 주고 산출된 법칙에 종속하는 것 때문에 칸트의 자유는 항상 자기입법과 같다. 입법의 무조건적

형식이 정언명법으로서 이것은 항상 보편화요구로서 제시된다.

2. 도덕판단의 근본특징

무어는 자연주의적 오류추리der naturalistische Fehlschluß 비판에서 사실판단으로부터 당위판단으로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흄이 말한 것처럼 사실로부터 당위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주제화 한 것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통해서 선은 그 자체로서 정의가능하기 때문에 선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선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추구대상이다. 그러나 칸트는 목적론의 윤리학에서처럼 선을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선의지에 따라서 행위하라고만 요구한다. 목적론적 윤리학에서 선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해 대체되거나 능가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오직 선의지로부터 유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지에 따른 행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즉 다른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위는 조건적이거나 가변적이고 병리적인 외적 상황에 좌우되게 된다. 칸트가 요구한 것은 행위는 오직 선의지에 따라 행위하라는 절대성 요구다. 이 점에서 선의지는 다른 상대적인 것에 의해 대체되거나 교환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다.

칸트는 이런 점에서 사실판단과 당위판단을 엄격히 구별하고 이것의 도출불가능성을 자신의 당위윤리학Sollensethik의 기초로 삼는다. 사실로부터 당위가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도덕법칙은 사실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당위의 타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근거에 대한 정당화를 그 자체에 있어서 제시해야만 한다. 사실은 절대로 당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반해서 당위는 사실의 적용가능근거가 된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당위의 질서를 분리하고 이 둘의 비대칭성을 철저하게 강조한다. 당위는 사실의 구속근거고 사실은 당위에 의해 적재된다beladen면 도덕법칙은 일차적으로 모든 사실로부터의 정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경험으로부터 독립한 것으로서 근거지으려고 한다. 여기서 순수성에 대한 요구는 모든 경향성이나 충동으로부터의 정화를 말한다. 도덕법칙의 순수성 요구는 일차적으로 모든 사실성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한다. 그렇다면 사실로부터 분리된 도덕법칙에 도덕적 사실에 적용된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칸트가 도덕명제는 절대로 상위의 다른 원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할 때 그는 도덕명제의 정당화는 다른 것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근거짓는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도덕법칙의 자기근거 요구는 도덕법칙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실로부터의 완전한 정화를 요구할 때만 성립한다고 칸트는 보았다. 칸트는 도덕법칙의 보편성을 증명하고 정당화할 때 이런 증명의 요구로서 일체의 타율성을 배제한다. 즉 도덕법칙의 타당성은 감성이나 역사적 사실, 초자연적 질서나 외적인 권위 등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만 한다. 이성의 독점요구는, 즉 이성을 통한 이성의 자기근거는 오직 이 보편법칙의 타당성이 이성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해야만 한다. 이

성의 법칙독점 요구는 이성이 자기법칙의 절대주인이기 위해서 이성 이외의 것으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것을 다 괄호 안에 배제하고 이것을 도덕법칙의 근거요구로부터 추방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칸트가 말한 근거의 문제는 도출Ableitung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기근거의 문제를 충족시키고 정당화해야만 한다. 이성은 다른 것에 의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역이 만약에 도출로 이해된다면 이 때 도출은 이성 안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칸트가 연역을 도출이 아니라 정당화로 이해하는 것은 선험적 연역의 범주 증명이나 도덕법칙의 정언명법을 증명하는 데서 확인된다. 자유는 그 자체가 궁극적이기 때문에 근거를 위해 다른 것에 의해서 도출될 수가 없다. 다른 것에 의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는 근거를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근거짓고 타당화해야만 하는 자기근거를 충족해야만 한다.

당위와 사실간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칸트는 이런 비대칭성을 무엇보다도 매우 분명히 요구한다. 당위는 사실의 정당화 근거지만 사실은 당위의 도출근거가 될 수가 없다. 모든 사실의 피안에 있으면서 사실을 사실이게 성립시키는 당위의 현실은 스스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아무 타당성도 유지할 수가 없다. 칸트는 이 점에서 사실을 넘어서 당위의 정당화 가능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사실 적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사실적kontrafaktisch 기초를 도덕법칙의 근거로 설정하고 정당화한다.

칸트는 준칙을 보편화하는 요구와 준칙을 귀납화해서 일반법칙을 경험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구별한다. 준칙의 보편법칙으로의 이행은 모든 도덕적 주체에게 타당하게끔 하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보편성은 초주관적으로 모든 도덕적 주체에게 타당한 것이 되게끔 하라는 형식적 요구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행위를 일반사례화시키는 귀납적 행위가 아니다. 칸트는 도덕법칙이 절대로 경험이나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도덕법칙의 보편화 요구는 그렇기 때문에 합의나 귀납적 일반화 내지는 극대화하고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칸트가 말한 도덕법칙의 일반화는 일반화라는 용어사용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정립적 가설과 아무 관련이 없다.

사실이란 사태의 현존을 말한다. 사태란 명제 속에서 그려진 세계의 그림이다.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항상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참이란 명제가 참일 때 명제에 상응하는 내용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말한다. 참이란 명제가 사실로서 충족된 것이기 때문에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현존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이란 사태의 비현존으로서 사태 비충족을 말한다. 이론적 판단은 항상 대상에 대한 참과 거짓으로 판가름난다. 명제는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주적용은 필연적으로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된다.

그러나 참과 거짓은 도덕판단의 경우에는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도덕판단은 명제의 검증처럼 참과 거짓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명제에 대한 진리주장의 경우에만 명제는 참과 거짓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도덕명제에 대한 판단은 진위 판단이 아니기 아니라 행위의 정

당화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도덕판단은 진위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의 정당화와 비정당화에 의해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위는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로 구분되지 틀리거나 맞는 것이 아니다. 참과 거짓은 명제의 진리나 허위를 가르는 데 적용된다면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것은 행위에 적용된다. 진리에 적용되는 기준과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은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도덕판단은 명제의 검증처럼 진이나 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나눌 뿐이다. 여기서는 진위가 기준이 아니라 행위의 타당성에 대한 적합한 정당화가 문제다. 따라서 맞거나 틀린 도덕판단의 검증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는 도덕판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말해야만 한다. 당위Sollen는 사실에 대한 참과 거짓의 구분이 아니라 사실을 구속하는 것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에 따라 그 타당성이 판가름날 수 있다. 옳고 그르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적합하거나 부적합하거나에 대한 판단은 항상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Kriteria을 요구한다.

분석판단은 진리기준이 모순률에 기초한다. 주어에 귀속될 수 없는 술어를 주어에 귀속시킨다면 이런 판단은 자기모순이다. 왜냐하면 분석판단의 최종기준은 모순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만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고서는 분석판단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다. 종합판단은 사실을 충족시키는 사태가 현존할 때 참이다. 참이란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제의 참에 해당하는 사태가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는 대상관련과 대상을 통한 충족을 노리기 때문에 항상 종합적 진리로 평가된다. 이런 범주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것이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 검증으로서의 칸트의 선험철학이 추구하는 바다.

그러나 도덕적 판단은 당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서 구속하는 당위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동반해서만 타당성의 적합함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세계 안에 있는 것을 주제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기술은 항상 그것에 상관하는 이론체계 안에서의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되는 대상은 항상 이론상관성에 의해 이해가능하게 된다. 도덕에 있어서 기술은 항상 당위에 의해 안내되고 인도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당위는 항상 사실을 구속하는 것으로서만 그 타당성이 검증된다. 사실이 당위에 의해 적재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판단은 항상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당위의 검증을 요구한다. 모든 도덕적 사실은 옳고 그름,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평가적 태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근거지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자연주의적 오류추리로 배격하였다.

칸트는 당위로 특징지워지는 윤리학을 근거짓기 위해 일차적으로 모든 사실의 피안jenseits allen Faktums에서 당위의 타당성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당위가 근거를 위해서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당위가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일차적으로 당위의 문제를 사실로부터 분리해내서 도덕판단의 성립가능성을 반사실적kontrafaktisch 가정 위에서 증명하고자 한다. 도덕판단의 당위를 근거짓는 문제가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반사실적 입장은 도덕판단의 자기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

나 당위가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거나 타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을 때 당위는 동시에 사실에 대립하는 추상성으로 남는다. 칸트의 윤리학은 당위를 반사실적으로 기초지우는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당위가 사실 안에서 어떻게 작용wirksam하는지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지극히 추상적으로 남아 있다.

당위는 사실을 적재하고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덕판단은 행위를 행위이게 하는 규범의 요구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당위의 개입 때문에 도덕판단은 당위의 근거와 타당성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덕적 행위의 정당화 요구는 바로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행위의 규범을 근거짓는 문제다. 칸트는 이런 근거의 요구를 이성의 자립성에 기초지운다. 이성은 자기 근거를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할 수 없기에 일차적으로 자율성의 논리를 고수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기초』에서 도덕판단이 성립하는 가능근거만을 묻는다. 그러나 그는 『도덕 형이상학』에서 가능성의 근거가 아니라 윤리학의 응용문제에 대해 심리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측면을 내용적으로 다룬다. 근거에 대한 물음Frage nach dem Grund은 분명히 도덕법칙이 성립하는 가능성에 대한 정당화를 겨냥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칸트는 도덕법칙을 현실적 문제에 적용Anwendung하거나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근거에 대한 물음과 도덕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다. 칸트는 이것을 이 두 저서에서 나누어서 다룬다.

칸트는 도덕법칙의 적용은 도덕법칙의 성립가능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도덕판단의 성립가능근거에 대한 물음을 묻는다. 그가 제시하는 선의지, 순수의무, 정언명법, 정언명법의 다섯 가지 정식화,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은 일차적으로 도덕법칙의 성립가능근거에 대한 타당성 물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인간학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한다. 도덕법칙에 대한 근거요구를 과도하게 설정함에 의해서 칸트는 도덕법칙을 심리학이나 인간학에 의해 근거지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경험주의적 잔재로서 비판한다. 그렇다면 사실로부터 정화된 채 설정된 이성의 자기 근거 설정이 어떻게 경험적이며 사실적인 인간의 행위에 접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칸트의 도덕체계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방치되고 있다.

사실로부터 도덕판단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당위는 자체에 입각해서 타당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수이성비판』에서 범주의 선험적 연역은 경험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경험의 가능근거로 사용할 때 이런 범주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마찬가지로 칸트는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당위의 타당성Geltung과 구속성Verbindlichkeit에 대해 묻는다. 칸트에 의해 설정된 물음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칸트를 평가하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위의 요구가 사실판단의 성립가능근거라면 이런 근거의 타당성을 되묻고 반성적으로 그 타당성을 밝히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사실로부터 나오거나 근거지워지지 않지만 동시에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것으로 작용해야만 하는 당위의 토대에 대한 정당화가 바로 실천이성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성은 이런 성립가능성과 성립가능성의 근거를 먼저 밝혀야만 한다. 당위가 사실로

부터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도덕판단은 항상 선험적이다. 그러나 이런 선험성은 항상 사실 안에 작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실과의 연관 아래서 그 타당성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론이성에서 범주가 경험의 체계적 통일을 위해 사용된다면 실천이성에서는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것으로 작용wirken하는 당위의 사태구속성이 문제다.

이론이성에서 범주의 객관실재성은 범주가 모든 종합을 수행할 때 타당한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서 증명된다. 그러나 실천이성에서 이성의 실재성은 범주처럼 객관실재적이 아니라 작용의 피할 수 없음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칸트는 범주의 객관실재성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이성의 작용의 실천적 객관성으로 묘사한다. 실천적 객관성이란 실천이성이 행위할 때 행위를 구속하는 것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추론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바로 작용이 부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작용은 사실로서 작동하게 된다. 칸트는 당위가 모든 도덕적 판단에 작용의 근거로 드러나기 때문에 작용의 사실을 이성의 실천적 객관성으로 증명한다.

당위가 사실 안에서 작용하는가 안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천이성의 자기증명, 즉 당위의 사실구속을 밝히는 문제에 속한다. 이것은 이론이성처럼 대상에 대한 통일 지향적 인식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 작용하는 규범적 정당화의 문제에 속한다. 따라서 실천이성의 자기증명은 범주의 객관타당성에 대한 증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정되고 대답되어야만 한다. 실천이성의 대상은 이론이성처럼 주어진 경험세계나 자연이 아니라 의지의 사용에 대한 정당화다. 실천이성에서 주체나 객체는 다 같이 의지의 작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론이성에서와 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판단을 내릴 때 이런 판단을 객관타당하고 보편적으로 구속력 있게 하는 그런 의지만이 실천이성이 증명하고자 하는 바다. 행위의 타당성과 부적합함을 판가름해주는 기준의 설정은 의지사용의 객관적 정당화를 통해서만 검증된다.

실천이성은 이런 기준설정을 경험이나 사실로부터 그리고 전통이나 외부von außen her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 자신이 스스로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워진 기준 자체를 오직 타당성과 근거에 입각해서 검증해야만 한다. 이성이 자기 자신에 의거해서 타율성Heteronomie으로서가 아니라 자율성Autonomie으로서 자기근거를 세우고 정당화하라는 요구 때문에 이성은 오직 자기의 근거를 자기 스스로 걸머지고 간다. 피히테나 헤겔은 이성의 본성을 실천적 자기해명으로 본다. 의지Wille와 의지된 것das Gewollte은 같기 때문에 이성은 자신의 의지작용의 타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의지가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성이 자신의 궁극성das Worumwillen을 그 자체로서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증명은 바로 실천이성이 스스로를 밝히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성은 바로 자기를 계몽해야만 하는 것에 의무지워져 있다. 실천이성의 정당화는 실천이성이 자기의 의지사용의 정당화를 스스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은 단적으로 이런 요구 때문에 강제없는 강제zwangloser Zwang에 자발적으로 따른다.

이성이 자기 스스로를 문제삼고, 자기적용Selbstanwendung, 자기주제화Selbstthematisierung, 자기비판Selbstkritik, 한계초월화Grunzüberschritt를 통해 스스로를 밝히는 증명은 이성의 실천적 자기해명에 해당한다. 이성은 궁극성에 대한 정당화이기 때문에 궁극성을 스스로 걸머지고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칸트는 이론이성에서 자기의식과 자기인식을 준엄하게 구별한다. 그는 동시에 자아에 대해서 일체의 지적직관을 거부한다. 이성이 자신을 근거지우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이성이 오직 모든 도덕법칙의 절대입법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이 점에서 도덕법칙의 자기근거 요구를 이성의 자기입법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성이 이성을 심판하면서 이성은 스스로 원고이면서 동시에 피고가 된다.

의지는 이성이 자기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이런 의지는 궁극적으로 근거에의 의지로 전개된다. 실천이성의 의지대상은 실천이성 그 자체다. 의지는 자신을 의지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궁극성을 의지할 따름이다. 이성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몽의 운명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 칸트나 피히테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이런 점에서 실천이성이 이론이성에 대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이성에 대한 실천이성의 우위는 칸트에게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칸트는 순수이론적인 차원에서 형이상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실천이성에서만 인간의 자연적 소질로서 자유의 형이상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유는 궁극적이다. 따라서 이런 궁극성은 자기 스스로를 그 자체에 입각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은 자기계몽의 책임을 스스로 걸머지고 가면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이론이성에 대한 실천이성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도덕판단의 성립은 이성의 자기의지와 당위를 전제하지 않을 때 아무 타당성이 없다. 이성의 작용은 모든 사실의 피안에 있지만 동시에 사실 속에서 드러난다. 작용은 항상 의지사용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 경험적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가능근거다. 빛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빛 그 자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칸트는 이런 빛이 바로 이성이 사실로부터가 아니라 초월적인 것에 대한 주목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본다. 칸트가 군대 용어인 주목하라Achtung는 것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성의 사실을 이성이 스스로 마련하라는 데서 비롯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성은 자기 안에서 작용하는 도덕법칙의 빛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작용을 통해서만 그 타당성이 증명될 수 있다. 도덕판단이 묶여 있는 측면은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당위의 현실성에 입각해서만 검증이 원리상 가능하다. 사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가능성으로서만 도덕판단은 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칸트는 보았다.

3. 도덕적 엄숙주의 비판

칸트의 도덕적 엄격주의ethischer Rigorismus는 두 차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는 칸트가 **이성을 통한 감성의 억압**Unterdrückung der Sinnlichkeit durch Vernunft으로서 쉴러의 인간학

적 입장에 의해 제기되었다.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이 단지 이성의 자기입법에서 유래한다면 이성이 아닌 감성의 역할에 대해, 칸트가 과연 총체적이고 정당하게 인간의 도덕심성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쉴러의 칸트 비판은 바로 이것을 겨냥한다. 칸트가 도덕감정에서 감성이 지니는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면 칸트에게서는 이성의 자기입법을 통한 도덕법칙의 내면적 존중이외에 다른 도덕감정이 설 땅은 없다. 쉴러는 이것에 반대해서 인간의 경향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격하시킨 것이 아니라 경향성을 법칙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격상시킨다. 따라서 이성은 감성적대적이 아니라 감성을 고양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경험과 대립하는 이성의 배타적 순수성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쉴러는 믿었다. 칸트는 루소나 쉴러가 제기한 인간의 도덕적 자연감정을 다 심리학적인 것으로 추방시킨다. 오직 이성의 싸늘한 과도한 보편성 요구에 의해서 도덕감정은 이성의 자기입법에서만 유래하는 것으로 제한시킨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 욕구는 허위일 수 없다는 기본원칙이 칸트에게서는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다른 하나는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범주의 객관타당성과 객관실재성을 요구한 것처럼 『실천이성비판』에서 도덕법칙의 성립을 위해 보편성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칸트에 의해서 과도하게 요구된 도덕법칙의 보편타당성은 모든 윤리적 실천이 지니는 개별성, 우연성, 역사성, 일회성, 상황성, 문맥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노출된다. 여기서 과연 이런 칸트 비판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칸트의 선험철학은 두 차원의 축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하나는 공간과 시간의 주관적 이상성을 증명하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문제에 속한다. 뉴튼 물리학에서 선험적 종합판단이 아주 모범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칸트는 철학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것, 즉 "선험적 종합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또한 칸트는 루소가 제기한 것처럼 자유가 자율규정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칸트는 양상범주에서 필연성과 우연성, 가능성과 불가능성, 현실성을 다룬다. 칸트에 따르면 양상범주는 대상에 대해 무엇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능력의 자기자신에 대한 관계를 다룬다. 양상범주는 무엇에 대한 대상 관련적 규정 판단이 아니라 판단능력 자체의 자기규정을 가능성과 불가능성, 필연성과 우연성, 그리고 현실성에서 다루는 것을 말한다.

필연적이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있을 수 없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notwendig=es kann nicht nicht sein는 것과 의미론적으로 완전등치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면 다르게 있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 unter Ausschluß des Anderen이다. 필연성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항상 비존재의 가능성을 제외시킨다. 칸트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다르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원리적으로 배제된 것unter Ausschluß des Anderen 혹은 그렇게 있어야만 하고 그것과 다르게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so und nicht nicht sein kann으로 표현한다.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필연성은 대안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필연성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이것과 다르게 있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정확히 칸트는 이런 필연성을 도덕법칙에 적용한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 본래 법칙의 필연성은 자연법칙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칸트가 이런 필연성을 도덕법칙에 적용할 때 이런 적용의 근거가 무엇이고 이런 적용의 타당성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은 도덕적 엄격주의ethicher Rigorismus 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칸트가 도덕법칙에서 필연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도덕법칙이 자유의 인지근거라는 것과 자유가 도덕법칙의 정당화 근거라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한다. 자유와 도덕법칙은 작용과 근거의 필연성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일차적으로 도덕법칙의 필연성을 논할 때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연법칙과의 필연성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칙과 자유의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법칙의 정식을 표현할 때 두 가지의 상이한 규정을 준다. 보편법칙은 준칙의 보편화 요구이기 때문에 의지사용을 이끄는 준칙의 보편타당성 요구와 같다. 또 하나는 칸트가 자연법칙의 정식으로 표현하는데 있다. 그러나 칸트는 자연법칙을 통해서 필연성을 결합의 필연성, 즉 인과적 필연성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그랬다가는 그는 범주적 오류추리에 빠질 것이다. 칸트가 말하는 실천이성의 인과율은 오성의 인과율이 아니라 이성 자신의 인과율, 즉 자유로부터 비롯되는 인과율Kausalität aus Freiheit 혹은 자유를 통한 인과율Kausalität durch Freiheit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미 자유를 조건의 계열에서 제약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의 계열에서 절대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칸트가 도덕법칙의 정언명법=자연법칙의 일반정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때 그는 범주적 오류추리를 한 것이 아니라 도덕법칙은 자연법칙과 같이 필연성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칸트의 도덕적 엄격주의 비판은 일차적으로 자연법칙에 타당한 필연성을 과연 도덕법칙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있다. 일차적으로 자연법칙은 자기 밑에 규정되는 개별사례에 대해 하나의 예외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개별사례는 예외 없이 일반법칙 밑에 포섭되고 강제된다. 그러나 칸트는 도덕법칙을 자연법칙에 적용할 때 자연법칙을 통해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일반성과 개별사례의 법칙포괄형 모델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칸트가 자연법칙의 정식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준칙의 보편화를 요구할 때 이런 요구의 엄격성을 말한다. 이것이 칸트의 도덕법칙이 지니고 있는 엄격성 요구다. 정언명법이 지니고 있는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 도덕법칙의 엄격성의 문제라면 이 때 필연성은 의무의 자기구속으로부터 비롯되는 행위의 필연성을 말한다.

“정언명법은 어떤 다른 목적과의 연관 없이 그 자체로서 행위를 객관적-필연적인 것으로서 대표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실천법칙은 가능한 행위를 좋은 것으로서 그러기에 이성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체를 필연적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들은 선의지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의 규정들의 형식이 된다. ”(GMS414)

행위의 원리와 관련해서만 도덕법칙의 정언명령은 객관성과 필연성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칸트가

도덕법칙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행위의 필연성이다. 따라서 칸트가 행위의 필연성을 통해서 밝히려는 것은 의지사용의 법칙에 대한 필연적 종속으로 이어진다. 도덕법칙의 필연성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연성에 대한 더 자세한 의미규정이 필요하다.

양상범주는 판단능력의 자기자신에 대한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의 양태를 말한다. 필연성은 동일성의 방식과 부정성의 방식으로 말해진다. 동일성의 차원에서 필연성은 항상 그렇다는 것만 가리킨다. 부정성의 방식에서 필연성은 비존재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Es schließt das Nicht-Sein aus. 칸트는 필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학과 논리학을 예로서 제시한다. 2 + 3 = 5는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이것과 다른 가능성이 원리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부정은 원리상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연적이란 그것과 다르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을 말한다. 반대나 대립이 불가능한 한에서 그것을 그렇게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필연성은 우리가 그것을 어길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를 강제한다. 모순률이나 분석판단은 우리가 그것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따르도록 우리를 강제한다.

칸트는 도덕판단에 있어서 선험성의 의미를 때로 필연적인 것과 객관적이라는 양의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객관화는 주체의 보편화를 말하기 때문에 의지사용을 이끄는 준칙의 보편화 요구와 의미론적으로 동치다. 그러나 정언명령의 필연성은 그렇게 자명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칸트의 의무에 대한 이해가 문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필연성은 강제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이런 강제성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타당하다. 칸트는 도덕판단을 증명할 때 도덕판단의 선험적 종합성을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보편적이란 도덕법칙의 타당성이 사적인 주체를 넘어서 모든 주체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이성적 주체에게 해당한다는 의미로서 이해된다. 칸트는 이것을 도덕법칙의 보편화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나 왜 도덕판단의 선험성이 필연적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칸트에 의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칸트의 윤리학이 도덕적 엄격주의로 비난받는 부분이 바로 도덕판단의 선험성이 필연성으로 해석되는 데 있다. 선험성은 경험에 비의존적이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경험심리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왜 필연성으로 해석되는 지에 대해서는 그 의미규정이 불투명하게 남아 있다.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판단이 필연적이라면 도덕판단에서 다르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처럼 필연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칸트는 거짓말의 일반화가 정언명법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거짓말의 일반화는 수행론적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법의 필연성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아래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격상 모든 인간이 죽어야만 된다는 물적 강제의 지배와 같은 논리적 구조를 지니

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죽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이런 법칙에 예외가 되는 단 하나의 사례도 인정하지 않지만 도덕법칙의 필연성은 이런 엄격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언명령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경험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연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이런 법칙의 강제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도덕적 명령은 이것이 법칙 아래 종속되어야만 하는 그런 강제성이 없다. 아니 그런 엄밀성을 요구할 수가 없다. 문제는 칸트가 말한 거짓말의 사례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엄격한 도덕법칙의 필연성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의 검증에 있다.

자기를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뻔한데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법칙의 필연성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일반법칙을 따라야만 하는가? 여기서 칸트는 도덕법칙의 의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의무는 타자가 나에게 강제하는 것을 말하지 내가 나 자신에게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칸트는 의무로부터 의무를 구속하는 일체의 외적인 타율성을 배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의무를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항상 자기강제로 이해한다. 이 점에서 의무에 대한 칸트의 이해는 의무의 외적구속과 서로 배치한다. 칸트는 단지 의무를 자기강제로 이끌고 감에 의해서 도덕적 엄격주의를 고수하고자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허용된다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행위자를 구속하거나 강제할 그런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칸트의 도덕적 엄격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칸트는 약속한 기간 내에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예를 든다. 칸트에 따르면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은 부도덕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사적인 삶의 원칙이 보편법칙이 된다는 것을 결코 충족시킬 수가 없다. 만약 이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의 행위는 거짓말이 보편법칙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거짓말의 존립인 약속지키기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칸트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을 보편법칙이 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 즉 약속지키기에 위배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보편화될 수 없다.

라이프니쯔는 이성의 질서와 사실의 질서 사이에 있는 증명방식의 차이를 구별한다. 전자가 필연성 증명이라면 후자는 우연의 검증에 속한다. 우연적 진리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필연성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칸트는 필연성의 도입을 통해서 이것의 진리결정을 감각에 호소하지 않고 증명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라이프니쯔의 논리를 따른다. 그러나 그는 수학이나 논리만이 필연적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법칙도 필연적인 것으로 증명한다. 그러나 이런 칸트의 주장은 현대 자연과학에서 벌어지는 필연성에 대한 이해와 분명히 다르다. 삼각형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이것의 부정이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190도인 삼각형은 삼각형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기모순이다. 삼각형의 정의에 의해 모든 개별 삼각형은 삼각형의 일반정의를 충족하도록 강제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삼각형도 삼각형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삼각형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다.

자연과학에서 법칙의 필연성은 법칙에 예외가 없다는 전제 아래서만 법칙의 필연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가 제시한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원인과 결과를 지닌다는 주장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칸트는 인과율의 경우에 있어서 자연과학에 대해 잘못된 주장과 인식을 지니고 있다. 물이 0도에서 어는 것은 이것에 위배되는 예외가 발견되지 않는 한에서만 법칙의 타당성이 강제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법칙의 필연적 강제성은 부정된다. 이런 이유에서 귀납적 일반화는 어떤 물적 강제도 지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칙의 일반화는 반대사례에 의해서 필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연법칙의 필연성은 법칙의 일반규정에 예외가 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을 때만 법칙의 강제성이 지배한다.

칸트와는 다르게 오늘의 학문적 증명은 필연성을 오직 논리학과 수학에만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연과학에서 법칙은 오직 반대사례가 제시되지 않는 한에서만 물적 강제를 지닌다.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에 따라서 예외 없이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과율을 결정론이나 기계론으로 이해하는 고전역학의 인과율은 그리고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칸트의 인과율 이해는 양자론의 운동구조를 해명하지 못하는 원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사건과 사건을 결합하는 결합의 필연성은 이것이 양자론의 미시대상에 적용될 때 그 타당성이 정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인과성은 법칙적 필연성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율은 결정성과 등가 내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칸트가 예로서 제시한 자연과학의 법칙성은 필연성과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 양자물리학은 칸트의 견해를 시대 제약적인 것으로 비판한다.

칸트는 아주 강한 의미에서 도덕법칙과 자연법칙을 정언명법의 형식화로 제시한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모델로서 해당된 모든 것에 대해 강제하는 필연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칙의 타당성은 법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만 타당하다. 지구의 중력을 전제할 때 지구를 탈출하려면 지구탈출속도v= 를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발사체는 예외 없이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고 지구를 향해 떨어질 것이다. 이 조건을 위반하고서 지구를 탈출하고자 한다면 어느 경우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한에서 이런 법칙조건은 모든 해당된 경우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강제한다. 사례는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법칙의 타당성은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지배적이다.

칸트는 도덕법칙의 보편화 요구를 가끔 자연법칙의 필연성 요구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런 엄밀성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의 일반성은 이런 법칙의 일반규정이 해당된 개별사례에 대해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지닌다. 그러나 칸트가 말한 도덕법칙의 보편화 요구는 이런 자연과학의 법칙이 아니다. 칸트는 도덕법칙도 이것이 자의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자연법칙의 일반성 요구를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가 도덕법칙의 필연성을 말할 때 그가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염두해 둔 것은 이런 물적 강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의미론적 조건에서 필연성을 말하는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칸트가 염두에 둔 필연성은 **의무**의 **필연성**이다. 칸트는 조건명령이란 설정된 목적으로부터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도출되기 때문에 모든 조건명령을 분석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칸트의 설명은 그렇게 자명한 것이 아니다. 왜 도대체 선험적 종합판단은 도덕명제에서 종합적이고 가언명령으로 표현되는 명제는 분석적인가를 구분하는 문제는 칸트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렇게 명확한 구별이 못된다.

칸트는 의무=필연성을 주장함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비록 외적인 강제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법칙에 종속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무는 타자가 나에게 강제하는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법칙을 어길 때 우리는 법칙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법칙에 위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논리적인 법칙을 어길 때 우리는 사고를 정합적으로 진행시킬 수가 없다. 수학의 제일공리를 위반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전제가 진리일 때 반전제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필연적으로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덕적 행위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자발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필연성으로 강제할 그런 규칙이 없다. 칸트는 이 점에서 의무=필연성=법칙에의 자발적 복종이라는 도덕적 엄격주의에 빠진다.

의무는 선의지에 기초하고 그것이 당위의 명령이니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의무는 구조상 동기도 의지도 목적도 아니다. 오직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당위Sollen와 진실 이외에 다른 것은 말할 수 없도록 강제되는 필연성müssen은 분명히 다르다. 후자는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거짓의 가능성이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지만 당위상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필연성이 가능성의 배제라면 진실을 말해야만 되는 필연성은 애초부터 다른 가능성(즉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필연성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미 다른 가능성이 다 배제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당위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덕판단에서 필연성을 요구하는 칸트의 주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어난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사실상 거짓을 말하고 살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현상이다. 칸트의 도덕법칙의 엄격성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필연성은 분명히 그것에 위배되는 반대사례를 허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도덕행위의 의무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칸트의 주장은 경험적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짓말하는 현상과 분명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당위의 표현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거짓말의 금지를 필연화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의미론적 차이가 있다. 필연성에 의한 강제는 분명히 당위의 요구와는 다르다. 필연성과 당위가 사실로부터 도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둘은 도덕판단의 당위적 성격을 표현한다. 그러나 당위가 필연성으로 이해될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칸트는 분명

히 도덕법칙의 필연성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비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따라서 의무=강제성=필연성을 연결하려는 칸트의 도덕적 엄격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해야만 한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등등의 도덕적 표현들은 이것의 기준이 경험이나 사실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한 그것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칸트는 이런 용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자연법칙의 필연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용어사용에 대한 타당성 근거제시요구가 도덕판단의 의무를 필연적으로 요구할 하등의 물적 강제나 논리적 강제는 없다. 여기서 칸트에 의해 과도하게 요구된 윤리법칙의 엄격주의Rigorismus는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엄격주의 대신에 행위의 정당화 요구로서만 도덕법칙의 당위가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칸트를 이렇게 이해할 때 칸트 자신이 도덕법칙을 경험적 차원으로 환원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경험적 차원에서는 행위가 일어날 때 이런 일어난 행위를 그 타당성에 있어서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칸트는 행위의 정당화가 아니라 행위를 인도하는 준칙을 항상 모든 이성적 주체에게 타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준칙을 보편화할 것을 요구한다. 행위의 정당화에 대한 근거제시가 아니라 행위를 인도하는 준칙을 보편화가능한 것으로 만들라는 요구에 종속하는 것이 칸트가 도덕법칙의 보편화요구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칸트가 모든 사람은 항상 동시에 어디서나 목적으로 존중하고 절대로 수단으로 다루지 말라고 요구할 때 이런 요구는 당위와 필연성에 있어서 이해되는 뉘앙스가 천지차이다. 만약에 이런 정언명법이 필연성을 의미한다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배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당위로서 요구할 때 비록 인간이 수단으로 대우하는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올바른 사용에 의해 타인을 나와 같이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보편성을 실행하게 된다. 필연성에서는 의지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당위에서는 이런 것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위의 실현에 의해 그렇게 행위하려는 우리의 의지사용이 제재나 저지를 받게된다. 따라서 정언명법을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엄격주의의 요구는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 도덕법칙의 보편화요구는 자연법칙의 일반화 강제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칸트는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때로 도덕법칙의 보편화 요구를 자연법칙의 정식화로서 표현하는 혼동을 보인다.

칸트는 분명히 도덕적 명령은 신이나 다른 존재자가 아니라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한다. 신은 칸트에 따르면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위가 적용될 수 없다. 당위가 적용되는 것은 충동이나 경향성이 제재를 받고 이것이 의무에 따라 행위하도록 요구되는 이성적 존재에게만 해당한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당위를 요구할 수가 없다. 인간만이 본능이나 충동에 의해 지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당위의 요구에 따르기 때문에 명령의 가능성이 타당성이 있다. 당위는 조건에 제약된 인간이 조건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당위의 요구를 따를 때만 성립한다. 따라서 당위의 요구 아래 있다는 것이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추론할 수

는 없다. 도덕적 엄격주의는 칸트가 도덕법칙의 타당성을 선험적 종합명제로 증명할 때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근본난점이다.

의무란 통상적인 의미에서 외적인 초월적 규범에 의해 우리 인간에게 각인되어서 작동할 때만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양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런 양심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각인된 Synderesis에 따라 우리의 행위를 선과 악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칸트처럼 의무의 근원이 신이 아니라 오직 이성의 명령에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의무가 외적강제가 아니라 내적강제로서 이성이 이성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의무의 근원이 이성이고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역시 이성이라면 왜 하필이면 이성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칸트가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의지사용은 법칙의 일반성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법칙의 일반성이 되도록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성의 자기강제는 이성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사용을 보편법칙의 요구에 일치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의 명령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계명을 어길 때 우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규범적인 제재를 받는다. 칸트에게서 명령의 주체와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은 자기강제를 받는다. 신의 명령은 내용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이 있다. 그러나 칸트가 말한 이성의 자기명령은 모든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오직 도덕법칙의 일반성을 따를 때 한에서만 인간에 대한 호소에 있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특수한 사적인 개별성을 넘어서 의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라는 형식적인 요구만 받는다. 따라서 칸트의 명령은 부드럽게 말하면 모든 도덕주체에게 요구하는 일반화요구이고 강하게 말하면 주체는 이런 것에 따르라는 것을 내포한다. 내용적인 실질구속이 없는 보편화에 대한 호소가 칸트가 말한 의무의 자기강제다.

4. 선의지와 순수의무

칸트는 독일어 일상언어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선의지der gute Wille에 대해 매우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칸트는 선의지 그 자체 der gute Wille an sich selbst 라는 표현을 통해서 행위의 추구대상이 선 이외의 것에 종속하는 것 일체를 비판한다. 그는 또한 최고선das höchste Gute과 완전선das perfekte Gute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완전선은 오직 의무와 법칙이 통일된 신에게만 해당한다. 선 의지에서 말하는 선의 최고성은 선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도구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칸트는 강조한다. 의무와 충동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겪는 인간은 완전선이 아니라 완전선이라는 이념에 무한히 다가가는 것만이 허용되어 있다. 최고선에서는 의무와 행복의 무한한 통일을 향해가는 이념의 무한접근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다른 것에 따르지 않고 오직 순수의무에 따라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 칸트가 최고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오직 의무에서부터aus Pflicht 비롯되는 것에 따르라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만 타당하다.

이론이성에서 그 자체Ansichsein는 우리의 인식능력과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로서 있는 것=우리와 독립된 것unabhängig von uns이기 때문에 인식론에서 그 자체는 의식 독립적인 실재의 자립성을 말한다. 그러나 실천이성비판에서 선의지 그 자체는der gute Wille an sich 의지의 추구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의지 자체의 대상은 의지 자신으로서 의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체로서 선을 추구한다. 이 때 그 자체는 결과 독립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결과 독립적이라고 해서 칸트는 동기절대주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의 선의지에 대한 많은 오해는 선의지 그 자체에 대한 강조가 결과 독립적이거나 결과를 무시하는 행위의 동기절대주의를 말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한다. 칸트는 선의지 그 자체를 이런 결과 무시적이거나 행위가 초래할 결과 독립적인 동기의 절대성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의지가 그 자체 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 의지 이외의 어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추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의 선의지 그 자체의 윤리학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에 대립되는 의미에서 심정의 윤리학Gesinnungsethik으로 곡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칸트의 선의지 그 자체는 분명히 심정의 윤리학이다. 칸트는 심정을 동기와 준칙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오직 절대적으로 선한 도덕적 심성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윤리에 대립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행위의 근거가 오직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한에서만 그렇다. 칸트는 “ 순수의무로부터 행위하는 심정Gesinnung, aus reiner Pflicht zu haneln (GMS406)”을 통해서 심정Gesinnung을 명확하게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어서 행위하는 도덕적 태도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칸트는 오직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einen moralischen Wert(GMS406)”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신의 선의지를 동기Motivation나 목적Zweck이나 결과Resultat의 윤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당위Sollen와 연관시킨다. 칸트는 또한 어떤 외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행위가 항상 그 자체로서 오직 선의지를 의지하는 한에서만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그의 윤리학은 행위의 결과Konsequenz를 고려하는 공리주의나 행위의 책임을 묻는 책임윤리와 구별된다. 그의 선의지에 대한 강조는 동시에 동기의 정당화를 묻는 동기주의와 구별되고 행위의 동기 정당화에 대한 도덕적 검증이라기 보다는 행위의 근거를 오직 선의지에 입각시키는 절대당위의 윤리학에 속한다.

행위가 초래할 어떤 결과를 고려해서 행위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오직 선한 순수의무로부터 수행되는 한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분명히 심정의 윤리학Gesinnungsethik에 속한다. 이 때 심정Gesinnung은 의지 그 자체를 오직 순수의무와 당위에 입각해서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그래서 칸트는 선의지에다가 “ 무제한적인ohne Einschränkung=unbedingt (GMS393)" 가치를 부여한다. 선의지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

라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무조건 행해지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 무엇에 도구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선의지는 그 자체로서 추구된다. 무조건=정언적=오직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칸트는 자신의 윤리학을 선의지의 윤리학으로 이해했으며 그런 한에서 선의지의 윤리학은 오직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당위의 윤리학이 된다.

칸트는 선의지를 특징지움에 있어서 "그 자체로서"라는 것을 제한 없이 윤리적으로 선한 것으로 규정한다. 단적으로 좋다schlechterdings gut라는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나 연관이 배제된 채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말한다. 칸트가 심정Gesinnung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선한 의지를 말한다. 단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 같이 의지의 최고 대상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지 그 자체에서 성립한다.

무제한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절대로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목적에 제한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단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이다. 의미론적으로 볼 때 단적으로는 모든 제약들로부터 독립해서unabhängig von allen Bedingten와 등가다. 선 그 자체는 모든 외적이거나 타율적인 것에 무관하며 오직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을 말한다. 칸트가 말한 좋은 심성die gute Gesinnung이란 일차적으로 선의지에 입각한 행동을 말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의무와 의지의 자발성을 결합하려고 한다. 선의지에 따르는 "의지는 항상 절대적으로 선하다"(Der Wille ist schlechterdings gut GMS437). 칸트에 따르면 "구속으로부터 비롯되는 행위의 객관 필연성이 의무다"(GMS439) 의무는 도덕법칙을 만드는 것과 도덕법칙에 따르는 것을 둘 다 포함한다. 의무는 충동이나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경향성의 극복을 전제하고 법칙에 종속하려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항상 법칙에 의해서 의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의식으로 본다. 의지는 일차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선한 것으로 정향시키고 그런 한에서 보편화가능한 법칙으로 만드는데 있다. 최고선은 오직 의무를 위한 의무에 따르기 때문에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법칙에만 종속한다.

"세계 안이나 세계 밖 어디에서도 제한 없이 단지 선한 것으로 사고될 수 있는 것은 선의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GMS 393)

칸트의 선의지는 목적이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의 순수성과 절대성 때문에 자주 막스 베버가 주장한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의 대립개념으로서 종종 심정윤리학Gesinnungsethik으로 비판되었다. 책임윤리에서 행위의 의미는 행위가 초래할 결과의 고려 하에서 행위가 목적성취에 이바지하는 것의 기여에 의해 적합하거나 혹은 부적합한 것으로 측정된다. 행위 자체의 절대적 자립성과 무매개성은 여기서 인정될 수 없고 오직 이것이 초래할 결과와의 비교에 의해 행위

의 책임을 묻는 것만이 책임윤리에서는 강조된다. 따라서 행위의 의미는 행위동기의 순수성과 절대성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와의 합목적성에서 도구적이거나 기여적으로 측정된다. 행위가 결과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때 행위는 목적에 적합한 행위로서, 그리고 목적에 위배될 때는 부적합한 행위로 측정된다. 그렇다면 행위 자체를 위한 행위는 제거되고 모든 행위는 목적의 실현에 일치하는 기여도에 따라 합목적성과 비합목적성으로 측정된다. 확실히 칸트의 선의지는 이런 도식에 의해 설명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의지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고 그런 한에서 자기의 의지를 보편타당한 것으로 법칙화하는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1) 도덕적 행위나 의도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Moralische Handlungen /Absichten verfolgen keinen Zweck.)
2) 도덕적 의도나 행위는 다른 그 이상의 어떤 목적도 추구하지 않는다. (Moralische handlungen /Absichten verfolgen keinen weiteren Zweck.)
3) 도덕적 행위나 의도는 다른 그 이상의 목적의 선을 위한 근거로 인해서 선한 것은 아니다. (Moralische Handlungen /Absichten sind nicht gut aufgrund der Güte eines weiteren Zwecks.)

목적의 실현은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도구의 적합성을 우선 순위로 고른다. 여기서 결과주의Konsequentalismus는 행위의 의도를 목적에 이바지하는 적합성에 따라서 그 적합성Angemessenheit, 숙련성das Geschickliche, 유용성Nützlichkeit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은 항상 목적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angemessen 방식으로 재어지고 선택된다. 설정된 목적의 실현을 고려할 때 수단의 자립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의 도구적 이해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행위가 초래할 결과와의 대차대조표에 의해 행위의 유용성과 비유용성이 결정된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행위를 목적론적 실현 아래서 이해하는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칸트는 자신의 행위를 절대로 도구적으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그의 행위론은 무엇에 대한 도구적 실현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행위하라는 입장을 취한다. 말할 것도 없이 칸트의 행위론은 행위의 순수성과 절대성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행위나 공리주의의 결과주의와 다르다. 선은 칸트에 따르면 다른 것들에 대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무제한적으로 좋다. 무엇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무엇에 기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좋다. 칸트는 선 그 자체das Gute an sich에서 그 자체로서an sich라는 것을 통해 '다른 것과 무관하게'unabhängig von Anderem를 강조한다. 선의지는 상황이나 외부조건에 제약된 조건이 아니라 상황에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좋다. 의지는 이것이 "결과를 야기 시키거나 성취하는 것"(GMS394)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좋다.

"오성, 용기, 재담, 판단력, 결단 계획에 있어서 지속성 등은 기질들의 속성"(GMS393)들로서 칸트에 따르면 항상 양가적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선하고 바람직란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악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자질들의 실현은 상황에 좌우되고 외부에 종속되기 때문에 늘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다. 이런 기질들은 분명히 선한 방향과 나쁜 방향이라는 이중의 가능성으로 그때 그때 측정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항상 양가적이다. 선의지가 그 자체로서 단층적인 것에 비해서 선의지가 아닌 것은 항상 문맥에 따라 양의적인 것을 지닌다. 칸트는 선의지에서 오직 절대적이고 단적인 의지사용의 순수성을 요구한다.

의지는 전통적으로 보면 항상 의지하는 행위의 목적론적 구조 때문에 의지하는 자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대학교수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학위논문을 써야만 한다. 학위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을 쓸 자격이 필요하다. 이런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위하는 자는 이것에 상응하는 어학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어나 독일어를 지금 공부한다. 여기서 목적으로 설정된 대학교수는 어학을 공부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대학교수가 된다는 것에 기여하기 때문에 적합한 행위로 채택된다. 이것이 소위 행위의 목적론적 구조로서 이해되는 일반적인 이해방식이다.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목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원인이다. 그러나 목적의 실현은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의 완성이 없을 때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목적의 실현은 행위의 실현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행위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만 자기목적이 아니라 목적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행위로 측정된다.

확실히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칸트의 선의지가 아무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의지는 항상 무엇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의지한다는 것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이것이 경험적인 차원이든 초월적인 차원이든 항상 의지하는 대상을 전제한다.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 **그 자체를 위해서 의지한다는 것**이 등장한다.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의지의 일종이다. 의지하는데 의지의 궁극목적이나 종착점이 결여된 의지로서 혹은 공의지로서 이것은 평가된다. 의지의 추구대상이 있든 추구대상이 없든 의지는 목적론적 행위구조에서 보면 의지는 항상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선의지는 아무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칸트의 선의지를 심정윤리에 속하는 것으로 비판한다면 우리는 칸트의 진의를 곡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칸트에게서 선의지는 의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특정한 무엇의 의지일 필요가 없다. 의지는 오직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의지자체를 선하게 방향지우고 그런 한에서 전체로서 자기를 세우는 것만을 추구한다. 칸트는 그래서 의지를 경향성과 같이 무엇에 대한 의지나 추구가 아니라 법칙에 따르려는 추구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경향성과 순수의지 사이에 놓인 근본적인 차이를 주목시킨다.

경향성Neigung, 충동Triebfeder, 의도Absicht, 행복Glück의 경우에서 행위는 항상 무엇을 의지하고 추구한다. 따라서 의지의 추구대상은 의지자체가 아니라 의지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의 대

상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통해서 무엇에 대한 외부지향적 의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상황이나 조건에서 자유로운 절대의지를 강조한다. 무엇 때문에 하는 행위도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의지의 움직임의 근거는 오직 의지가 스스로 추구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순수동기로부터 비롯되는 자발적인 행위가 바로 선의지다. 칸트는 여기서 오직 자발적으로 "의무로부터 비롯되는aus Pflicht" 것을 강조한다. 칸트에 따르면 순수의무만이 다른 동기들로부터 비롯되는 도움에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행위를 산출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는 오직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에 따르는 것만을 의미한다.

칸트에게서 의지의 추구대상은 의지자신이다. 즉 자기를 스스로 의지한다. 그러나 자기의지는 대상이 없는 공허한 추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궁극성Worumwillen은 더 이상 다른 목적에 대해 도구적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성을 지닌다. 따라서 의지의 추구대상은 궁극성이기 때문에 이런 궁극성은 이런 저런 추구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 없다. 공허한 대상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궁극성은 이런 저런 특정한 추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궁극성은 우리 의지가 추구해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행위목적의 가능근거다. 인간의 의지는 항상 무엇을 의지한다. 그러나 이런 궁극성은 의지의 구체적인 추구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궁극원인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의지는 궁극성에 대한 태도Verhalten로서만 궁극성에 향해져 있다. 칸트는 의지의 순수성을 통해서 의지의 지향구조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궁극성에 대한 태도만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되는 것das Gewollte이 동시에 의지하는 욕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오직 선의지가 이해될 수 있다. 쉘링이 이성은 이성이려는 의지로 그리고 헤겔이 자유는 자유이려는 의지로 규정한 것은 다 이런 맥락에서만 이해가능하다.

선의지는 궁극원인final cause으로서 의지되기 때문에 의지의 가능근거이지 의지의 의욕대상이 아니다. 선의지는 궁극원인으로서 의지하는 자를 전체로서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오직 의지하는 자는 이런 가능성 앞에 마주치게 된다. 이런 궁극성은 그 자신 자기원인Selbst-Ursache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순수의무로부터 올바른 일을 행하는 자는 오직 그 자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궁극적인 추구대상은 오직 선의지다. 따라서 의지는 항상 그 자체로서 자기의 궁극성인 이런 선의지에 따르고 일치해야만 한다. 의지의 행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런 궁극성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의 전체태도와 개방성을 결정한다. 칸트는 선의지의 실현을 의지의 궁극적인 자기충족으로 본다. 따라서 칸트는 선의지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동기의 절대화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의지의 궁극적인 추구대상은 선의지다. 선의지는 의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나침반이다. 의지는 나침반의 인도에 의해서 자신의 태도를 궁극적으로 선의지에 종속시킨다. 이런 복종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외적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강제에 해당한다. 의지는 자신의 궁극성인 선의지의

실현과 관련해서만 의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주체와 의지의 추구 대상은 같다. 그렇다면 의지의 주체는 의지의 궁극적인 추구대상인 선의지를 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되어감의 없어서는 안될 조건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칸트가 의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가 야기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동기의 순수성과 절대성에서 행위하라는 구조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선의지는 의지가 실현해야만 하는 궁극성이기 때문에 의지는 단지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만 추동된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자신의 의지행위를 통해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서 세우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총체적 염려** Sorge um sich selbst는 **자신의 궁극성에 대한 배려**Sorge um sein Worumwillen로서 오직 이런 궁극성의 완성만이 문제다. 칸트는 이런 궁극성의 실현이 인간의 도덕화에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인간은 이런 도덕화의 완성을 위해서만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실현을 강제 없는 강제에 따라 완성하고자 한다.

자의Willkür, 의도들Absichten, 충동Triebfeder, 경향성Neigung은 칸트에 따르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항상 바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측정된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항상 목적을 실현하는 정도에 따라서 도구적 유용성이 측정된다. 목적이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외부로부터 추동되는 것, 행위의 이유가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의 실현을 위해 있는 것으로부터 칸트는 선의지를 구해낸다. 즉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한 실현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 하라는 요구만을 따른다. 여기서 선의지를 강제하는 외적이나 내적인 강제는 없다. 선의지는 오직 자신의 의지만을 따른다.

인간이 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가는 더 이상 의문의 대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자명한 것을 넘어서 그 배후로까지 물음을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의문의 대상이 아니라 자명한 전제다. 인간이 악을 추구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제재가 뒤따른다. 그러나 선의 추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자명성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이런 자명성의 실현이다. 우리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선을 향해 정향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의 실현만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신에 의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선에 대한 움직임이 각인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성이 의지의 훈련에 의해서 경향성으로부터 정화되어서 선에 무제약적으로 개방되어 있는가를 연습하는 문제는 칸트에게서는 오직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에게 남겨져 있다. 문제는 이런 궁극성은 다른 것을 위한 도구적이거나 전략적 수단이 아니라 궁극물음으로서 그 자체 자기목적이고 우리의 전체 행위를 위한 지평이라는 데 있다. 오직 이것만이 의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실현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의지하는 것은 의지의 궁극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추구의 대상이 된다.

목적 합리적 행위구조는 항상 목적의 실현에 유용한 수단의 목적 부합성과 적합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수단은 항상 자립성을 상실하고 설정된 목적과의 연관 아래서만 적합성

Angemessenheit과 유용성 Nützlichkeit 그리고 숙련성Geschicktheit을 통해서 파악된다.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행위는 이런 목적 수단 적합성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성과의 연관 아래서 이해된다. 선의지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강조하는 선의지와 이것의 실현에 대한 인간행위의 의무에 대한 요구는 목적 수단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성의 자기실현과의 연관 아래서 평가되어져야만 한다. 왜 선의지인가의 문제는 오직 궁극성의 실현이라는 연관 아래서만 대답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GMS 396)만이 이성의 자기실천 즉 순수행위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행위를 경향성에 따른 행위와 순수의무에 따른 행위로 나눈다. 칸트는 경향성을 매우 총괄적인 의미에서 의도Absicht, 욕구Begierde, 행복Glück, 충동Trieb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욕구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 때문에 자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의 목적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그 원인이 있다. 칸트는 이런 행위일반을 가리켜서 경향성에 따른 행위로 부른다. 그는 이것을 오직 순수의무에 따른 행위Handlung aus reiner Pflicht와 구별시킨다.

행위는 목적 합리적 수단 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오직 선의지의 궁극적 실현과의 연관 아래서만 이해된다. 따라서 행위는 칸트에 따르면 언제나 선의지에 대한 자발적 의무로 전개된다. 행위는 오직 자기의 궁극목적에 대한 요구에만 따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신의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행위다. 칸트는 여기서 오직 "의무 때문에aus Pflicht(GMS 398)" 행하는 것과 "의무에 적합한pflichtmäßig(GMS 398)" 행위를 구별한다. 의무를 위한 의무는 일차적으로 의무가 무엇에 도구적으로 적합한 그런 의무가 아니라 절대 자발적인 의무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무에 적합한 의무는 설정된 것에 적합한 행위방식을 말한다. 인간의 인륜적 도덕성에 대한 요구는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되는 행위가 아니라 순수의무로 비롯되는 행위를 하라는Handlungen nicht aus Neigung, sondern aus Pflicht(GMS 398)" 명령으로 되어 있다.

칸트는 의무에 적합한 행위를 도덕성의 합법성Legalität der Moralität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나중에 칸트가 법의 정언명법에서 말하는 그런 합법성 뿐만 아니라 오직 자기근거에 입각해서 행위하라는 도덕성과 대비된다. 법의 합법성은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된 규범의 효력에 일치하라는 것을 말하고 도덕성의 합법성은 행위가 설정된 규범에 일치해서 행하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순수의무에 기초하는 행위는 오직 근거 자체에 입각해서 행하라는 요구에 따른다.

설정된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행위는 행위의 목적 부합성에 일치할 수도 있고 이것에 위배될 수도 있다. 칸트는 행위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 pflichtmäßig의무에 따르는 행위 "와 "pflichwidrig 의무에 거역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의무는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항상 주어진 규범이나 규칙과의 관계에서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행위가 규범에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별의 근거는 이미 설정된 규칙에 있다. 명제의 진리주장이 참과 거짓으로 구별되듯이 행위 역시 규범이나 규칙에 적합할 때는 의

무에 적합하거나pflichtmäßig 의무에 위배되는pflichwidrig 것으로 구분된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돕는데 있어서 매우 헌신적이다. 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의 행동은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동이 지니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칸트에 따르면 동정심이 많은 행위는 그 자체로서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성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다. 칸트에 따르면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비롯되는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절대적으로 타당한 행위를 지닌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용상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있어서 조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순수의무에서 비롯되는 칸트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다는 가언적 성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타인을 도우라는 형식을 지녀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격률에 스스로를 묶기 때문에 여기서 돕는 근거는 그 자체로서 좋다라는 것에 입각한다.
칸트는 외적인 비교나 동일화에 대해서 오직 그 자체만을 위해서um seiner selbst willen =nicht um des anderen willen 행위하라는 순수의무reine Pflicht를 제시한다. 일차적으로 순수의무는 그 자체로서 자기를 순수의무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디로 향하는 방향의 부재로 특징지워진다. 순수의무는 무엇에 입각해서나 무엇에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행위하라는 구조만을 지니고 있다.
의무에 적합한 행위는 행위가 상응해야만 하는 규칙entsprechend dem Gesetz 때문에 항상 규칙에 적합한 동화나 일탈로 전개된다. 행위가 규칙에 적합할 때는 적합한 행위가 되고 행위가 규칙에 위배될 때는 위법적인 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 때 행위는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항상 주어진 규칙에 일치하는가entsprechend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가nicht-entsprechend에 따라서 그 적합성이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규칙 자체의 타당성은 아직 그 자체로서 정당한 것인지가 증명되고 있지 않다. 행위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규칙에 따르거나 위배되기 때문에 규칙은 행위에 대해서 항상 외부적이다. 즉 조건에 매어 있다.
순수의무에 따르는 행위는 이와는 반대로 행위의 근거 자체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되어 있어야만 하고 동시에 정당화에 입각해서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의무에 따른 행위는 법칙에 일치해서entsprechend dem Gesetz가 아니라 그 자체가 법칙에 근거해서auf Grund des Gesetzes라는 구조를 따른다. 행위가 오직 행위의 자기정당화요구를 따르는 것에 스스로를 묶기 때문에 행위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타당한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묶는 것을 행위의 자기구속Verbindlichkeit으로 규정한다. 이것의 보편화된 표현이 법칙Gesetz의 의미다. 행위가 선의지에 입각할 때 의지는 항상 법칙에 따르도록 강제된다. 순수의무에 따른 행위의 자기구속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법칙의 의미다.
칸트는 그 자체로서 법칙에 근거한 행동과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가 충돌할 때 오직 법칙에 근거해서라는 것에 따르라고 한다. 왜냐하면 법칙에 근거해서는 항상 법칙의 근거에 대한 정당화와

무조건성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행위가 법칙에 일치할 때 행위가 일치하는 법칙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칙은 항상 법칙자체의 타당한 근거를 따라야만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칸트는 법칙에 상응해서가 아니라entsprechend dem Gesetz 법칙에 근거해서auf Grund des Gesetzes라는 요구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선의지는 나의 사적인 행위원칙Maxime을 단지 그 자체로서 타당한 것에 따르도록 명령한다. 법칙은 이런 의지가 상호주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구속력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나의 행위는 나를 통해 나를 보편타당한 것으로 묶는 것에만 측정된다. 사적인 행위원칙은 법칙에 묶여 있고 법칙은 항상 상호주관적으로 타당한 보편성을 충족시키도록 강제된다. 이 때 강제는 법칙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지가 의지를 묶는 것을 말한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Legalität=entsprechend dem Gesetz과 도덕성Moralität=auf Grund을 구별한다. 합법성은 행위가 일치해야만 준거틀이 이미 제한적으로 미리 있는 것을 말하고 행위를 이런 준거틀에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행위가 일치해야만 하는 준거틀이 항상 옳다는 규범의 자기증명은 여기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에 반해 법칙에 근거해서라는 요구는 행위의 근거를 스스로 정당화하라는 요구에 입각하기 때문에 제한적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선하고 그런 한에서만 무제한적으로 정당화되어야만 한다.

칸트는 행위로부터 행위를 그 자체로서 보편타당한 것으로 만들라는 형식적 보편화의 요구에 우리의 행위를 종속시킨다. 법칙Gesetz이란 칸트에 따르면 행위를 설정할 때 이것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구속력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법칙이란 행위의 보편타당한 자기구속과 같다. 선의지의 원칙은 순수의무를 통해서 법칙과 연결된다. 선의지의 행동은 자신의 원칙을 통해서 법칙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될 때만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존중에 있어서 이런 존중의 근원이 전혀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동시에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섞이거나 거기에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5. 법칙에 대한 존중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는 칸트에 따르면 오직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다. 칸트는 행위들을 의무적, 허용적, 금지적 행위로 나눈다. 의무적 행위란 오직 선의지에 따르는 한에서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된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행하는 순수의무의 행동을 심성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순수의무로부터 행위하는 심성Gesinnung, aus reiner Pflicht zu handeln”(GMS406)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오직 의무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칸트는 "도덕법을 위한 존중"Achtung fürs Gesetz을 의무의 자발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칸트가 말하는 존중은 누구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대한 지향적 존중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수동적 감정과 확연히 구별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경험적이고 사실관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칸트가 말한 존중은 경험적인 것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부터 자극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외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감정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법에 대한 존중은 의무의 자발성으로부터만 해명된다. 오직 의무에 따르는 행위만이 법칙의 토대며 거기로부터만 자신이 준 법칙에 스스로 따라야만 하는 내적 강제력이 구속력을 얻게 된다.

칸트가 도덕법칙의 존중을 통해 말하는 법칙은 법학에서 말하는 법률규정도 아니고 십계명과 같은 신의 율법도 아니다. 이것은 또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의 필연성도 아니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법칙은 단지 예지계에 통용되는 것이며 그 타당성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해당한다. 감성적 세계의 피안에서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에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은 현상계에서 적용되는 그런 도덕감정과는 다른 기초에 의해 밝혀진다. 칸트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행위를 통해 스스로 존중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경험적 존중과 대립시킨다. 존중은 분명히 “감정”(GMS401F)으로서 "법칙의 주체에 대한 작용이고 절대로 법칙의 원인이 아니다.“(GMS401F) 즉 칸트에 따르면 법칙에 대한 존중은 ”영향을 통해서 수용된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스스로 야기된 감정“(GMS401F)이다. 칸트는 근원상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은 이성이 스스로를 작용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에서 항상 도덕법칙에다가 숭고미Erhabenheit를 부여한다. 칸트는 숭고미를 두 차원에서 이해한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숭고미는 모든 경향성으로부터의 추상을 말한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숭고미는 이성이 자기가 준 법칙에 자발적으로 따름에 의해서 이 자발적 복종으로부터 존중심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숭고미가 자연성을 넘어서 가는 의미에서 칸트는 자연성으로부터 승화되어서 도덕법칙에 대한 자발적 일치를 요구한다.

법칙에 따르는 존중은 칸트에 의하면 외적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를 매개로 해서 스스로에게 법칙을 주고 법칙에 종속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활동”Tätigkeit des Willens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의지의 활동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해 스스로를 행위하는 데 있다. 칸트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을 모든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칸트의 인간론에 의하면 인간은 현상계의 영역안에서 경향성에 의해 지배되면서 동시에 물자체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도덕법칙을 창조하며 사는 두 시민적 긴장이다. 신에게는 절대로 명법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도덕법칙 자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명령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이 경향성에 의해 자연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한 도덕적 명령은 애초부터 발생할 수가 없다. 명령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경향성과 법칙이 갈등을 일으킬 때 만이다. 도덕적 명령은 의지가 의지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향성으로부터 눈을 돌려 법칙에 일치할 때만 요구된다.

인간은 사실의 차원에서 경향적 충동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것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

다. 그는 또한 예지계의 구성원으로서 당위에 의해 묶여 있다. 도덕적 명령은 의지가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명령하는 것으로서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법칙에다 스스로를 묶기 때문에 자율적이다. 외적 강제가 아니라 내적인 필요성에 의해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일치시키기 때문에 도덕적 명령은 "강제 없는 강제"에 따른다.

칸트는 여기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이 경향성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런 한에서 이것이 반사실적 감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은 반사실적 지평에서 단지 도덕법칙에 일치시키는 의무의 자발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도출된다. 칸트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극받거나 원인지워지는 것을 통해서는 도덕법칙의 자기존중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왜냐하면 "최고의 무제약적 선"(GMS401)만이 오직 의무의 자발성에 입각해서 자신의 의지를 경향성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법칙에 스스로를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탁월하게 선한 것"das so vorzügliche Gute(GMS401)을 도덕적이라고 부른다. 이런 도덕성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당위로서 확인되고 있다. 인격 안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선은 외적인 자극이나 원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내적인 자발성에 의해서 법칙으로 산출된다. 즉 "내 준칙이 일반법칙이 될 수 있도록 의지하는 것 이외에 달리 나는 행위할 수가 없다."(GMS402)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 속에서 약속을 하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신한다. 첫째는 상황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려움을 탈출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상황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전자의 경우는 행위가 오직 도구적이거나 교활하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절대로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훼손을 가했다는 의식을 가짐이 없이 단지 상황타개를 위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약속의 파괴는 약속을 통해 스스로를 묶는 의지의 자기파괴다. 따라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요구된 상황의 논리에 관계없이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될 때 보편법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 이외에 어떤 목적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직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보편법칙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적인 삶의 원칙을 법칙에 일치시켜서 보편법칙으로 생활화하는 것이 도덕적 주체가 실현해야만 하는 과제다. 도덕적 주체의 덕은 보편법칙에 일치해서 스스로의 의지를 삶으로 만드는 데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내가 의무의 원리를 피한다면 이런 원리가 곧 악이기 때문이다."(GMS402) 약속을 지킴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보편법칙으로 정식화되는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6. 의지와 자의

『도덕형이상학 기초』에서 칸트는 명시적으로 의지와 자의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구별

이 비로서 분명하게 표현되는 곳은『도덕형이상학』에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덕형이상학 기초』에서 이런 것이 구별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의지의 자율규정과 타율규정을 통해서 칸트는 이미 『도덕형이상학 기초』에서 이런 구별을 암시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 『도덕형이상학 기초』와 『도덕형이상학』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저서에서 이 문제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분명한 것으로 옮겨지고 있을 따름이다. 『도덕형이상학』에서 분명히 다루어진 자의와 의지의 구별을 『도덕형이상학 기초』를 다루는데 인용한다면 의미이해가 분명해질 것이다.

준칙들이 사적인 삶의 원칙이라면 이것은 항상 두 가지 가능성에 따라 평가된다. 준칙들이 원하는 행위Wollensakt들이기 때문에 준칙의 행위는 분명히 무엇을 원하는 지향적 행위로 특징지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가 준칙에 그리고 의지가 보편법칙에 따르는 것으로 구분하면 이것은 칸트의 의도에 어긋난다. 준칙이나 법칙 역시 의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구별은 적합한 것은 아니다. 칸트가 의지를 통해서 자기의지를 말하는 것은 이런 의지가 아주 특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기의지는 의지의 자기규정으로서 자신의 규정을 보편법칙에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칙은 주체 자체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법칙에 대한 존중 역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자연의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이성적 존재는 법칙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동하는 혹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를 도출하기 위해 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지는 다름 아닌 실천이성이다. 이성이 피할 수 없이 의지를 규정한다면 객관적이고 필연적으로 인식된 행위들 역시 주체적으로 필연적이다. 다시 말해서 의지는 경향성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실천적이고 필연적으로 다시 말해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다."(GMS412)

인용된 곳에서 칸트는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nach der Vorstellung der Gesetze zu handeln=원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것 nach Prinzipien zu handeln=의지der Wille를 같은 것으로 사용한다. 칸트는 실천이성을 의지와 같은 것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의지는 다른 의지들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의지의 자기규정das Bestimmende gegenüber einem anderen Willen을 말한다. 즉 의지는 자기자신을 법칙으로 규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자의는 의지를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이외의 것을 통해 규정당하는 것das Bestimmbare durch ein anderes을 말한다. 의지의 자기규정은 의지가 자기자신을 매개로 해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 속에서 의지된 것 역시 자기다. 의지는 자기자신의 규정을 스스로 내용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의지를 수동적으로 규정되는 자의와 구별해서 능동적인 자기규정으로 본다. 스스로를 규정하는 행위가 의지고 다른 것을 통해 규정된 것이 자의다. "법칙들은 의지로부터 출발하고 준칙들은 자의로부터 출발한다."(MS VI226)

칸트가 의지와 자의라는 두 개의 독립된 의지사용을 구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를 의지와 자의로 구별하고 있는 지를 구별하는 것은 칸트에게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법칙에 대

한 의지 역시 의지인 한에서 의지와 다른 어떤 독립된 의지가 아니다. 그러나 법칙에 대한 의지는 준칙들의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의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분류상 자의에 속하면서 내용상 자의와 구별되는 한에서 의지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행위라는 것이 밝혀진다. 칸트는 이것을 그래서 자기의지라고 부른다. 의지는 "일반법칙에 대한 자의의 준칙의 유용성을 자의의 최고법칙과 규정근거"(MS VI214)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칸트는 의지를 지향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법칙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규정행위로 이해한다.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서 지향적 행위는 자의로 규정된다. 그러나 의지는 준칙을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숙고를 반드시 동반한다. 자의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행위에 정향되어 있다. 행위는 항상 무엇을 추구하는 행위다. 칸트가 자의에 대립해서 사용하는 의지는 자의와 다른 행동이 아니라 자의를 심사숙고해서 법칙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의지 역시 자의에 관계한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자의를 통제하고 조정함에 의해서 자의를 법칙으로 만들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도덕적 숙고나 반성이 자의에 영향을 미쳐서 자의적인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에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준칙들이 자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일차적으로 무엇에 대한 지향적 행동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준칙을 법칙으로 변형하는 의지는 무엇에 대한 지향적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준칙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행위에 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준칙을 통제해서 법칙으로 제어하는 의지의 자기규정이 스스로를 도덕적인 주체로서 증명할 수 있다. 인간이 이성적 주체라는 것은 칸트에게서 준칙을 통제해서 준칙을 법칙에 일치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의식적으로 통제함에 의해 준칙을 법칙으로 일치시키는 행위를 한다. 이런 행위의 자발성이 의지의 자기규정에 속한다.

여기서 의지의 궁극적das Worumwillen des Willens인 추구대상은 의지자신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즉 의지는 자신의 궁극성을 도덕법칙에 일치하게끔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궁극성에 대한 의식은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어떤 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을 의지한다. 이것이 자기규정으로서 자기규정을 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는 도덕의 자기창조를 말한다. 말할 것도 없이 칸트는 이것을 도덕법칙의 자기창조로 보았다. 도덕법칙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행위는 오직 자기의지를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단지 당신의 준칙들에 따라 행위하라. 이런 준칙을 통해서 당신은 동시에 이런 준칙들이 일반법칙이 되도록 그렇게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GMS421)

도덕적 의지는 칸트에 따르면 아주 분명하게도 도덕법칙에 대한 의지다. 준칙과 함께 준칙에 거역해서 준칙을 일반법칙이 되게끔 우리의 의지를 통제하고 도덕화하는 것이 칸트가 말한 의지의 자기규정에 속한다.

칸트는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로부터 도덕법칙의 성립가능성을 이끌어 냈다. 순수의무로

부터 비롯되는 행위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필연적이고 이것이 모든 도덕주체들에게 타당하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내적인 정신상태나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그리고 주관적인 성향들로부터 정화되었기 때문에 도덕법칙에 대한 감정은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적어도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경험적인 감성처럼 가변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도덕법칙은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순수한 도덕감정이다. 도덕감정의 순수성은 의지가 모든 타율규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스스로에게 명령의 형태로 제시하는 데서 성립한다. 도덕감정의 순수성은 의지가 의욕을 원하기 때문에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법칙에 일치하게끔 하라고 명령한다. 오직 그는 자발적으로 명령하는 요구에 스스로를 일치시킨다.

자의적인 행위의 차원에서 사람은 이것을 원할 수 있고 저것을 원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행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가능성들 앞에 직면할 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위의 자의성이다. 칸트는 이런 자의를 항상 수동적pathologisch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반해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의지의 행위는 무조건적kategorisch이다. 자의는 항상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주관적인 성향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는 항상 조건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순수성, 자립성, 완전성, 자기결정성이 결여된다. 상황에 제약되어 있고, 의식상태의 그때 그때의 성향적 기질에 좌우되는 행위는 항상 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제약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오직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만이 의지의 자기규정으로서 도덕법칙의 분석대상이 된다. 완전히 선한 의지는 오직 선 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오직 선의지 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행위가 의지의 순수한 자기규정으로서 도덕법칙의 존중을 가능하게 한다.

의지하기 때문에 자유인 행위는 의지가 아니라 자의적인 행동이다. 자의란 의욕함에 있어서 주관적 의도와 성향을 반영한다. 자의란 의도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선택해야만 한다는 선택 그 자체는 이미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칸트는 선택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행위를 자유가 아니라 자의적인 자유로 규정한다. 이것은 항상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임의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필연성과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 칸트가 보았을 때 선택의 자유나 자의적 행동은 다 조건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칸트는 **자기규정을 통해서 궁극성을 도덕적으로 근거짓는 것**die moralische Begründung des Worumwillens durch Selbstbestimmung을 진정한 의미에서 의지의 자유로 본다. 의지의 궁극적인 추구대상이 무엇에 대한 지향적 추구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런 의지는 자신의 자기규정을 도덕적으로 근거짓는 것에 의해서만 추동된다.

자의의 논리적 구조가 반드시 목적-수단-연관관계에 있는 가언적 명령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의는 항상 목적-수단-적합성의 구조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가언적인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의지는 이런 도식에 의해서 평가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추구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궁극성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궁극성을 도

덕적으로 근거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궁극성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성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최종근거다. 궁극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것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이 의지된다는 실천을 가리킨다. 칸트는 그래서 실천적 행위=의지= 도덕적 행위=궁극성의 도덕적 기초를 같은 것으로 본다. 자기의지는 의지의 자율규정을 통해서 자신의 궁극성을 창조하는 것, 즉 도덕주체로서 스스로를 세우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가능근거로서 의지자체의 궁극적 실천을 말한다. 실천이성이 이론이성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은 비교에 있어서가 아니라 실천에 있어서 이런 궁극성을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역설적인 표현, 즉 의지는 의지자체를 의욕한다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다.

7. 도덕적 금욕주의 비판과 행복의 목적론적 의미

페이튼이 잘 지적하는 것과 같이 칸트는 분명히 행복에 대해 적대적인 철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칸트는 의무의 윤리학을 위해서 행복이 지니고 있는 인간행위의 목적론적 본질을 충분히 밝히고 있지 못하다. 칸트가 도덕적 숭고미를 위해서 행복을 충분히 목적론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부터 그가 행복을 경멸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행복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의무의 윤리학은 동시에 행복 친화적이지도 않다.

칸트는 행복을 경향성의 일종으로 보았다. 그의 인간론에 따르면 그리고 그의 사변적 철학 기저에 흐르는 기본가정에 따르면 오성의 범주는 이것보다 열등한 감성에게서 유래하지 않는다. 상위의 능력은 하위의 능력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며 동시에 서로 섞일 수 없다고 칸트는 보았다. 마찬가지로 그는 이성을 통한 도덕적 숭고미의 감정은 이것보다 하위의 위치에 있는 감성적 조건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는 경향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부터 이성을 순화시켜서 이성을 통한 이성의 자기감정 즉 도덕적 숭고미를 더 높은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제외한 다른 것은 의지의 본성을 규정할 수가 없다.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규정에 있어서 이성을 통한 인륜적 입법을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칸트의 근본견해는 그렇다면 이성과 감성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서만 인간의 총체적인 궁극성이 드러난다는 인간의 행복추구를 정당화해야만 하는 요구에 봉착한다. 행복이 의지를 규정할 수가 없다면 이성의 인륜적 의지가 인간의 총체성을 충족시키는가라는 의문이 일어난다. 여기서 칸트가 이성을 통한 이성의 자기입법에서 유래하는 인륜적 숭고미를 위해서 다른 도덕적 감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분명히 밝혀져야만 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의 기초에서는 단지 인륜적 도덕법칙에서만 기인하는 도덕감정 즉 도덕적 숭고미를 다룬다. 그러나 행복, 충동, 자의적 욕구, 성향 등 구체적인 경험적인 도덕감정은 『실천이성비판』에서 아주 다루고 있다. 여기서 행복은 부인할 수 없이 칸트에 따르면 궁극성의 목적론적 구조가 아니라 충동의 세계Triebwelt에 속한다. 순수한 도덕감정과 경험적인 도덕감정

을 나누는 것은 칸트가 도덕감정의 기초를 이성을 통한 인륜적 자유에 기초지우려는 것에 기인한다. 칸트에게서 감성적 충동이 차지하는 역할이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도덕감정이 스토아적 금욕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신의 윤리학이 구체적인 감성적 실존이 거세된 금욕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후기 저작에서는 인간학적인 도덕감정들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저작 내에서 경험적인 도덕감정이 정당하게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다.

"행복론(행복주의원칙)이 내적인 법칙제공으로서의 Eleutheronomie를 대신해서 근본원칙으로서 설정된다면 이것의 결과는 모든 도덕의 부드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MS378)

이성을 통한 감성의 억압 Unterdrückung der Sinnlichkeit durch Vernunft은 분명히 칸트의 도덕적 엄숙주의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다. 욕구, 충동, 행복추구, 경향성이 다 수동적이고 병리적이고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목적적이 아니라고 추방당할 근거는 없다. 오직 이성을 통해 마련된 의지의 형식만이 선험적이고 순수하고 경험심리학이 아니며 자율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무제약적 추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도덕감정을 순수성에 기초 지우려는 과도한 요구 때문에 행복을 단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감정으로 격하시킨다. 도덕법칙의 존중으로부터 발생하는 도덕감정은 순수하고 숭고하다는 이유 때문에 칸트는 행복이 존재론적 추구와 일치의 실현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칸트의 윤리학은 의무론적 윤리 때문에 오직 이성을 법칙의 제정자와 법칙의 복종자로만 고정시킨다. 따라서 칸트의 윤리학이 선의 추구와 실현으로부터 오는 행복의 실현을 경향성의 윤리로 배척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바로 칸트에게서 당연한 것이 바로 칸트의 윤리학이 취약한 것으로 비판받는 근거를 제공한다.

선의 추구로부터 자연히 인간의 행복이 도출된다. 선은 목적론적 윤리에서는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추구의 대상이다. 인간의 행위는 항상 선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게끔 조건지워져 있다. 인간이 자신 안에 자명하게 제시된 이런 자연적 심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의지의 자율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선을 추구한다는 것과 선의 실현을 통해서 행복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같다. 따라서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인 심성의 규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일치의 기쁨이다. 따라서 칸트는 행복이 지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지나치게 의무의 관점에서 평가절하하고 있다. 선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선의 실현은 모든 개별자의 행위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 선의 실현을 통한 행복의 향유가 아니라 칸트는 행복을 순화시켜서 의무를 위한 의무의 스토아적 요구로 우리를 몰고 간다. 경향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칙정립의 순수성으로부터 생기는 도덕법칙의 존중이 순수한 도덕감정이라면 이런 도덕감정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총체적인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선의 실현을 통한 행복의 성취는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되어야할

바 당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행복이 단순히 경향성의 일종으로 격하되면 행복을 통한 인간의 존재론적 일치의 기쁨은 퇴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의무의 실현을 위해서 행복을 격하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해 감성과 이성을 완전히 조화시켜야만 한다. 이성은 순수성을 위해서 인간조건을 이루는 감성적 실존에 대해 억압자가 아니라 감성적 실존과 함께 이것을 고양시켜야만 한다. 선의 실현이 행복의 성취와 같은 것은 바로 이런 총체성의 요구에 기초해서다. 선의 실현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의 감정은 절대로 허위일 수가 없다. 칸트는 루소로부터 자율적인 자기입법의 자유개념을 빌려오지만 그와는 다르게 인간의 자기사랑과 행복에 대한 욕구를 경향성의 일종으로 격하시킨다. 그러나 루소는 칸트와는 다르게 인간의 욕구는 절대로 허위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선에 기초하고 선을 실현하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는 절대로 허위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행복추구는 주관적인 경향성의 일종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에 속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추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의지로서 자기실현을 향하고 있다.

칸트는 분명히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규정을 인간의 도덕성에서 정당화한다. 인간의 인간성은 분명히 자기규정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시키지 않고서는 달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칸트는 이 둘의 관계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성 안에 도덕성의 실현을 통한 인간의 자기완성을 밝힌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실현을 위해 인간의 행복조건을 제외시켰다. 바로 이 점에서 선은 그 자체로서 추구된다는 칸트의 윤리적 엄숙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그가 선의 실현을 통한 인간의 행복추구로서의 목적론적 윤리학 대신에 의무를 위한 의무의 완성에서 인간의 인간성을 인간의 도덕성의 실현으로 보는 의무론적 윤리를 대표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칸트는 도덕적 행복을 행복으로부터 정화된 한에서 의지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준 법칙에 일치할 때 도덕적 완전성에 대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병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외부로부터 자극되는 것에서 유래하는 도덕법칙은 근원이나 근거의 정당화 과정에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든 원칙들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자기애 혹은 고유한 행복의 일반 원리 밑에 속한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모든 규칙들은 의지의 규정근거를 낮은 욕구능력 밑에 둔다."(PV 22)

칸트는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것을 도덕법칙의 원리로 만들 때 이것은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칸트의 주장은 매우 과장되게 보인다. 왜냐하면 도덕법칙이 근거를 위해 경험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과 경험적인 것에 의존해서 도덕원칙을 세우는 것이 도덕법칙의 원리에 자기모순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도덕법칙의 근원이 반사실성에서 유래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경험에서 유래한 도덕법칙이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것으로 이어질 때 유지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동정심, 상호존중, 자기사랑, 자기보존 등등으로부터 유래된 도덕원칙이 법칙의 순수성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여전히 타당할 수가 있

다. 칸트는 도덕법칙의 제한적 타당성이 아니라 무제한적 타당성을 위해서 타당성의 범위를 무제약적으로 만들려는 의도 때문에 경험에서 유래하는 도덕법칙이 근거상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덕법칙의 타당성을 무제약적으로 요구하는 타당성 정당화의 보편화 요구는 동시에 법칙의 형식성을 제외하고는 내용적인 가지규정을 주고 있지 못하다.

"고유한 행복의 원리가 의지의 규정근거가 된다면 인륜성의 원리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PV 23)

칸트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하는 것은 경험적 도덕법칙을 도덕법칙으로 만들 때 이것이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데서 분명하다. 루소가 인간의 자기사랑과 아웃사랑을 도덕원칙의 근본으로 여겼다고 해서 이것이 도덕법칙의 자기모순이 된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 칸트의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심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사실로부터 추상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순수성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타당성의 범위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보편법칙의 무제약적 타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자기모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경험적으로 보면 루소는 자기애를 도덕법칙의 기초로 여기고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도덕적인 근본원리로 본다. 이 둘의 주장이 서로 상충하고 이 주장에 합당한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덕적 통찰이 도덕법칙에 위배되거나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칸트는 도덕법칙의 타당성 범위를 특수하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제약적으로 타당해야만 한다는 과도한 요구 때문에 경험에서 유래하는 도덕원칙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도덕법칙의 타당성 범위를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칸트는 이것을 경험에 기초하지 않는 도덕법칙의 보편화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서 인간의 덕 역시 자기의 가능성을 현실태로 완성하는 의지의 훈련이 아니라 오직 이런 법칙에 따르는 의무로 고정시킨다. 칸트에게서 덕은 경향성으로부터 정화되어서 도덕법칙의 보편성에 따르려는 의무다. 따라서 경향성을 벗어나서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의무가 덕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덕에 대한 요구는 행복에 대한 요구와 일치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덕과 행복을 동등한 것으로 보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학을 병리적인 것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칸트 비판은 극단적이다.

"경험적 원인에 기초하지 않는 일정한 도덕적 행복은 그 자체 자기모순적인 허깨비다."(MS 377)

아리스토텔레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상 행복을 추구한다. 비록 그에게서 행복은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행복은 인간이 지닌 가능성을 현실화함에 의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충족행위를 말한다. 의무와 덕을 추구하는 소크라테스를 그는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행복이 단지 경향성의 일종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자기실현이라면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조건에 속하지 덕에 대립되는 충동이 아니다. 칸트는 행복을 도덕성의 토대로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복추구가 지니는 이런 존재론적 일치의 기쁨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칸트에게서 인륜성 내지 도덕성은 도덕적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도덕적 명령이 아닌 것은 다 조건적인 것으로서 칸트의 윤리학 안에서는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행복은 그래서 칸트의 의무윤리학 안에서는 추방된다. 덕은 싸늘한 보편성의 요구 아래 오직 의지의 충동으로부터 정화되어 법칙에 일치하려는 복종심으로 된다. 칸트는 완전성에 대한 요구와 현실성에 대한 요구가 일치한다는 전통적인 덕의 개념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문맥에서는 덕의 추구는 항상 자기실현과 완성의 욕구충족과 일치했다. 그러나 칸트는 현실성과 완전성을 분리Trennung von Vollkommenheit und Wirklichkeit함에 의해서 덕과 의무의 통일이 아니라 의무의 실현을 위해 덕을 단지 법칙에 종속하는 훈련으로 본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경험적인 적용을 지니지 않는 것 즉 도덕적 감정에 기초해서 도덕적인 완전성Vollkommenheit의 이념을 반사실적인 당위로 제시한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통일이라는 근본구조 때문에 항상 한 인간 안에서 대립하는 두 규정의 통일로 이해된다. 칸트 역시 인간의 근본구조에 있어서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세계론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 인간 안에서 대립하는 두 세계 인간인가 아니면 한 인간 안에서 대립의 통일로 전개되는 가에 따라서 인간의 위상은 확연히 구별된다. 칸트에게서 인간은 의지의 순수성과 의지의 병리성이 서로 실천적인 대립에 있다. 칸트는 도덕법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의지를 병리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해내서 의무에 일치시키려고 한다. 도덕적 완전성에 대한 의지는 도덕적 당위로 나타나고 이것은 도덕적 완전성의 실현이 아니라 이것에 무한히 다가가는 이념적 요구로 나타난다. 도덕적 완전성에 대한 요구는 이념적 요구로서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이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 인간에게서 이 두 대립하는 질서는 통일된 현실성이 아니라 통일되어야만 하는 무한이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자연성, 인간의 인간성은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도덕성의 이념에 다가가려는 것으로서만 측정된다. 즉 일치를 현실적으로 향유하는 행복의 현실적 실현은 칸트의 의무 윤리학에서는 항상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연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이 항상 측정ausmessen되고 있다.

완전성과 또한 이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축복Seligkeit은 실현된 것이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가 아니라 피안에서 단지 실현되어야만 하는 무한과제로 남는다. 현실은 항상 이런 차이에 의해 측정되는데 칸트는 이 틈이 난 차이를 인간의 무한한 이념에 대한 일치운동으로 역동화 시킨다. 이념을 통해 차이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인간은 이념에 다가가려는 의무의 수도승이 된다. 의무의 성지순례자는 일치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향해서 무한히 고행을 한다. 의무의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짐에 의해서 인간은 단지 이념에 다가가는 당위적 존재로 측정된다. 도덕적 의무를 위해서 행복을 추방시킨 칸트의 윤리적 엄숙주의 안에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정당한 욕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최고선과 이것으로부터 유래하는

도덕적 행복의 감정은 칸트에게 따르면 단지 신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무한히 진행될 이념으로서만 제시된다. 인간은 그러나 최고선과 행복을 자기 안에서 현실화시킬 능력이 없다. 이런 무능력이 항상 인간이 이념에 의해 추동되면서 동시에 이념에 의해 실현될 수 없는 차이로 측정된다. 의무와 행복의 통일은 인간의 최고선 안에서는 실현되지 못한다. 이런 통일은 단지 완전선인 신에 의해서만 보상된다. 그러나 칸트는 도덕적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를 위해서 인간의 최고선을 도덕적 의무의 완성으로 본다. 최고선과 또한 이것에 일치함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축복과 완전성에 대한 현실적 향유는 칸트에게서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 결과 의무를 위한 의무의 추구는 행복한 일치에 대한 보상도 없이 금욕적으로 무한히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칸트의 의무 윤리학에는 최고선과 축복의 통일이 결여되었다. 이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간은 항상 도달할 수 없는 불일치 즉 도덕적 이념과 현실적 경향성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

인간이 순수성과 자립성의 요구 아래 자신의 이성 안에 도덕법칙을 근거지우면 지울수록 역설적이게도 이런 **완전성과 축복의 통일**Vereinigung von Vollkommenheit und Seilgkeit은 그만큼 지연된다.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항상 통일이 지연되거나 저지된 통일로 나타나는 곳에 바로 인간이 자리잡고 있다. 일치를 바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무기력감Ohnmacht이 항상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통일은 현실에서가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이념에서만 보상된다. 그러나 이런 보상은 이성의 자율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요청하는 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은 칸트에게서 창조의 주인으로서 모든 현실성의 주인으로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충족시켜줄 당위의 하느님이 된다. 당위로 떠밀려난 무기력한 신이 칸트에게서는 요청을 충족시켜줄 현실적인 신이 된다. 이성이 자기의 자립성 안에 자립성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면 할수록 이성은 자기 안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칸트는 발견하게 된다.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자기근거를 위해 타율성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날수록 동시에 이성이 자기 안에 자기근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무기력성에 빠진다. 완벽한 형식주의의 승리는 승리하는 순간 동시에 자기몰락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이성의 자기계몽은 충족된 것이 아니라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요청되고 있다. 하느님이 도덕법칙의 근거가 아니라 완전성과 축복의 통일을 보상하는 도덕적 요청으로 등장하는 칸트의 의무 윤리학 안에서만 신의 무기력성이 동시에 경험되고 있다. 이성이 근거를 위해서 자기 안에 도덕법칙의 절대성을 근거지우면 지울수록 이성은 이 근거를 형식적 일반화로서만 드러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완전성과 행복의 실현을 요구하면 할수록 이런 축복의 일치는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성은 자기 안에 자기근거를 절대로 충족할 수 없다는 역설에 부딪힌다. 이 역설은 칸트의 의무의 윤리학 안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의 의무의 윤리학이 근본적으로 어떤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적 숭고미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이 인간을 능가할 때 발생한다. 이 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외적인 크기가 인간을 압도할 때 발생한다. 여기서 원인은 외부에 있고 주체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칸트는 스토아학파와 같이 일체의 경향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에다 도덕감정의 근원을 두고 있지 않다. 신은 우리에게 모든 도덕감정의 근원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칸트는 도덕감정의 근원에서 신에게서 도덕적 숭고미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숭고미는 오직 이성이 감성으로부터 정화된 채 이성이 스스로에게 불러 일으키는 감정이다. 숭고미는 인간의 자연성을 넘어서는 의미에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 귀의가 아니라 오직 이성이 자기에게 자기 감정의 근원이 된다. 이것은 막스 쉘러와 같이 신성한 것das Heilige을 것을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과 사뭇 대조된다. 막스 쉘러나 하르트만에게 있어서 가치의 근원은 인간이 정립하는 활동에 있지 않다. 목적론적으로 구조지워진 가치들의 서열에 있어서 인간은 다만 위치지정자로서 이 서열을 수용하며 자기화하는 자유만이 있지 서열 자체를 결정하는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칸트의 자율성 강조와 규정된 목적론적 가치서열을 따르는 막스 쉘러의 인격의 윤리학은 분명히 대조적이다.

칸트의 도덕감정의 구조에서는 일치나 행복의 실현에 대한 기쁨이 없다. 도덕감정은 오직 순수의무로부터 비롯되는 도덕법칙에 대한 자발적 복종에서만 생겨난다. 이것은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성의 순수성에 기초하고 이성의 순수성은 오직 이성이 자기가 준 법칙에 자발적으로 일치하는 데서만 생긴다. 여기서 칸트는 구체적인 인간의 구체적인 도덕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한 법칙의 존중심만 다룬다. 인간이 자기를 자유롭게 내어줌Hingabe에 의해서 보다 커다란 것을 다시 얻는 방기의 기쁨은 칸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자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는 기독교의 사랑의 감정은 분명히 도덕적 숭고미보다 근원에 있어서 앞서가고 더 고귀하다. 그러나 칸트는 사랑의 감정 분석이 아니라 이성으로부터 유래하는 자율규정의 도덕감정이 지배한다. 이미 쉴러가 인간의 총체적인 미학이념에 입각해서 잘 비판한 것처럼 칸트의 도덕감정에는 순수의무에 대한 싸늘한 보편성의 요구가 과도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경향성과 의무의 화해로서의 인간의 구체적인 도덕감정은 어느 정도 실종되고 있다.

사랑이란 보다 커다란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그릇이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의 예비적 길이라면 비우는 것은 보다 큰 것을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스럽게 스스로를 비우는 것은 스스로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역설이 지배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가치는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가치의 근원을 형성하고 인간은 이것에 따름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충만한 감정을 향유한다. 의무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법칙에 대한 청교도적 훈련만이 지배한다. 칸트가 왜 인간의 구체적인 도덕감정이 아니라 단지 이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도덕감정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지가 먼저 밝혀지고 비판되어야만 한다. 이런 비판의 근거는 인간이 자기 안에 자율규정을 통해 가치를 절대적으로 창조할 수 없다는 한계에 기초한다. 의무의 도덕감정은 사랑을 통한 수용의 도덕감정에 비하면 지나치게 인간을

좁게 축소하는 위험이 있다.

칸트가 덕을 경향성으로부터 정화시켜서 도덕법칙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 덕은 이성의 덕은 충족시킬지 모르지만 인간의 구체적 실존에 대한 도덕감정은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인간이 자기 본성의 창조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자율규정으로 생기는 도덕감정이 인간의 근원적인 도덕감정에 대한 실질적인 충족이 될 수 있을까? 정확히 칸트의 의무의 윤리학은 이런 인간의 기본충동 즉 사랑을 통한 인간의 자기비움과 자기초월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론적 난점에 빠진다. 도덕법칙의 형식성은 분명히 인간의 구체적인 총체적 감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 때 거기에 상응해서 도덕감정도 함께 자라난다. 이런 감정은 인간이 자기를 찾기 위해 자기를 더 큰 것을 위해 비우는 포기와 같이 진행된다. 자기를 얻기 위해 자기를 버리라는 기독교 사랑의 가르침은 동시에 인간의 인간본성에 대한 가장 탁월한 도덕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사랑과 같다. 따라서 사랑은 분별력이 결여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이 심화된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에 속한다. 사랑은 존재하는 것을 그것의 실존적 있음에서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언제나 대립하는 것을 통일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

칸트는 덕을 항상 경향성으로부터 정화되어서 의무에 따르는 의지의 훈련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의 덕은 항상 경향성과 대립하는 위험이 있다. 비록 칸트가 도덕법칙의 감정과 이 감정의 근원을 법칙에 따르려는 의무로 파악함에 있어서 도덕적 숭고미를 강조하기는 해도 이 숭고미 안에 인간의 자연적 감정이 깃들 여지는 제한되거나 억압되고 있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자기충족을 바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욕구로서의 행복이 그의 의무의 윤리학 안에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추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 이성의 가장 근본적인 추구는 칸트가 보았을 때 의무와 행복의 통일에 있다. 인식론적으로 형이상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칸트는 형이상학이 단지 자유의 형이상학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성이 자기 안에 자기근거를 요구하면 할수록 이성은 자기 안에 자기근거가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이런 차이에 노출된 자신의 불일치를 고백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칸트의 도덕철학이 지니고 있는 근본 난점이다.

무엇보다도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고 사악한 자들이 승리를 하는 현실적 불일치에 만족할 수 없는 도덕적 인간들의 정의로움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칸트는 믿었다. 이성은 바로 도덕적 인간의 실천적 고뇌를 달래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성은 보상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의무와 행복의 통일과 근거 내지 충족은 이성이 아니라 이성이 요구하는 신에게서만 가능하다. 이성이 행복에 대한 요구를 의무에 종속시키는 도덕감정의 숭고미와 이성이 의무와 행복을 통일시킬 수가 없어서 의무와 행복의 충족근거로서 신을 요구하는 것 사이에 이성은 처하게 된다. 이것은 칸트의 의무의 윤리학이 분명히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일관성의 결여는 분명히 이성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성이 요구하는 것 즉 신을 요청하게 된다.

각자의 인간은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가 아니라면 내세에서라도 이런 보상은 반드시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에서는 의무와 행복의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통일이 가능하려면 인간의 삶은 내세에서까지 무한히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성은 의무에 따라 살라고 말하지만 의무에 따른 삶의 행복까지 약속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의무와 행복의 실질적인 충족근거는 이성이 아니라 이성이 요청한 신에게서만 가능하다. 이런 이성의 믿음Vernunftglaube이 없다면 도덕성은 불가능하다. 즉 인간이 도덕이 명령하는 무조건적인 의무와 도덕법칙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행복에 대한 요구로부터 완전히 무관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성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행복과 덕 사이의 수렴불가능성에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도덕적 삶은 반드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칸트의 도덕성은 그 결과 신을 전제한다. 자유, 신, 사후의 삶에 대한 이성의 믿음과 요청은 이성이 할 수 없는 것을 타자로서 요구한 결과다. 이성은 인간을 도덕성에 일치해서 살라고 명령하지만 이 명령은 행복과 의무의 통일을 약속할 수 있어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도덕성의 자기충족은 이성 안에서가 아니라 이성이 요구한 타자 즉 신에게서만 가능하다. 이성은 자기 안에 자율성의 근거를 요구하면 할수록 이성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근거가 없다는 역설에 부딪힌다. 이성은 이 역설에 부딪혀서 돌파를 시도하는 데 이 돌파가 바로 이성이 요청한 이성의 믿음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 믿음을 기독교의 사랑의 신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요청으로서의 신으로만 좁게 해석한다. 칸트가 즐겨 사용하는 메타퍼 즉 밤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은 창조의 주인으로서의 신의 현실성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으로 요청된 신을 가리킬 따름이다. 의무의 윤리학과 행복의 윤리학 사이에 내재한 깊은 불일치의 심연을 이성은 메꾸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면서 이 심연의 깊이를 이성의 타자 즉 신에게 요청한다. 이성이 자율성의 과도한 요구 아래 신을 타율성으로 배제하면 할수록 이성은 자기가 배제한 타율성을 자기 안에 요청으로서 끌어들이는 논리적 비일관성에 직면하게 된다.